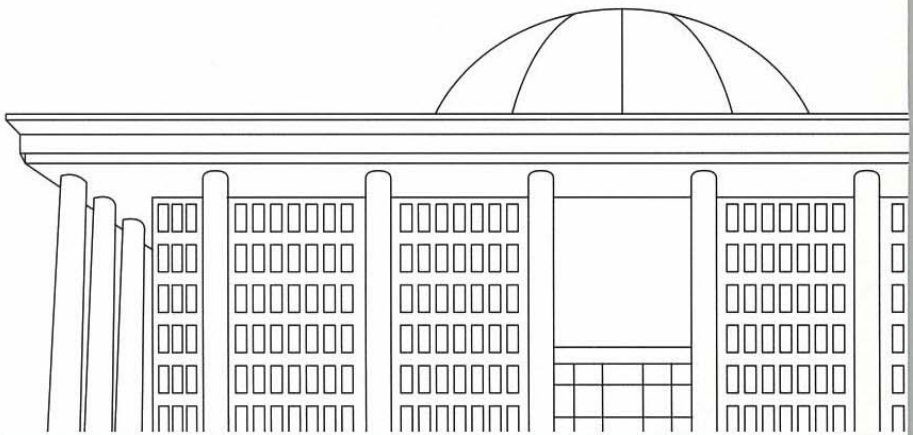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009. 11



발간등록번호: 31-9700223-000723-14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2009. 11.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발 간 사

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으로 3조 5,78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정부담의 한 형식인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통제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으며, 특히 BTL사업은 미래 재정부담을 발생시킴으로 예산안과 같이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올해 최초로 BTL사업 한도액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05년 BTL 방식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된 BTL사업에 대해 정부는 매년 약 1조 8,000억원의 재원으로 향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총 36조 1,818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BTL사업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7월 BTL사업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I, II」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금번에는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의 경우 일부 BTL사업의 타당성과 민자사업 추진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제출된 예비한도액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BTL사업 한도액 자료만으로는 미래 정부 재정부담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평가보고서가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데에도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 요 약

## I. 서론

-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이하 ‘BTL사업’)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 채납하고 대신 시설관리 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동 시설을 약정기간(10~3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임
-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미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BTL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2009년은 국회가 BTL 한도액을 의결하는 첫 해이니 만큼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요구한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도액 심의를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BTL사업의 개요, BTL사업의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현황을 정리함
  - 제3장에서는 2010년도 정부가 요구한 한도액안을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으로 나누어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 분석을 통해 확인된 BTL사업 심의 시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을 정리함

## II. BTL사업 현황

### 1. BTL사업 한도액

- 2005~2009년까지 추진된 BTL사업의 한도액은 총 10개 사업에서 35조 9,418억원임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한도액의 평균 60%가 고시되었고, 한도액의 평균 40%가 민간사업자와 협약 체결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로 한도액의 10%만이 협약 체결되어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황임(2009년 5월 기준)
- 2010년도에 정부가 요구한 한도액은 3조 5,788억원으로 2009년 6조 5,465억원 대비 45.3% 감소된 금액임
  - 추진주체별로는 국가사업 2조 147억원, 국가보조 지자체사업 3,394억원 및 지자체 자체사업 1조 1,070억원으로 구성됨
  - 대상시설별로는 초중등학교시설 1조 1,070억원, 군주거시설 1조 5,595억원, 학교시설 4,552억원 및 하수관거 2,217억원 등으로 3개 시설이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의 90%를 차지함

[표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사업규모	한도액
<b>【국가사업】</b>		<b>20,147</b>
① 군 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개 대대 등	15,595
② 학교시설	2개소	4,552
<b>【국고보조 지자체사업】</b>		<b>3,394</b>
③ 하수관거	200km	2,217
④ 문화복합시설	1개소	380
⑤ 도서관	1개소	147
⑥ 과학관	2개소	531
⑦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b>【예비한도액】</b>		<b>1,177</b>
소 계		<b>24,718</b>
<b>【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b>		<b>11,070</b>
합 계		<b>35,788</b>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 2.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을 통해 금액이 확정됨
- 2005~2009년 BTL 사업 추진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급금 규모는 2009년 10월 기준으로 약 36조 1,818억원임
  - 임대료가 30조 4,077억원이고 운영비가 5조 7,741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 정도임
  - 운영비는 기숙사시설의 경우 전체 정부지급금의 33%로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6.76%에 불과해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요구한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기초하여 정부지급금 예상액을 추산하면 약 7조 5,80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임대료가 6조 3,468억원, 운영비가 1조 2,339억원으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정부지급금의 16%에 상당함

### I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 1. 총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분석

- BTL사업 한도액 승인에 따라 향후 소요될 정부지급금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BTL사업 정부지급금 지급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로 확정되므로 BTL사업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 향후 협약으로 확정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63.5%, 2006년 72.9%, 2007년 57.5%, 2008년 21.6% 수준으로 나타남
  - 2005~2009년 시설유형의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중 최고 비율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10년 BTL 한도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는 6조원 규모로 예측됨
  -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중 최소 비율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에는 2조 8천억원 규모로 예측됨
- BTL사업 한도액 심의에서는 한도액 자체뿐만 아니라 동 한도액 의결에 따라 향후 소요될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규모가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 대상시설별 한도액 분석

### □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 BTL사업은 국가중장기계획, 정책방향, 국가 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연차별 계속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미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과학관시설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BTL사업이 미래 과학관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민자사업 적격성

-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설계부터 건설·운영까지 시설의 전 생애를 민간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 추진시보다 비용이 절감(VFM)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월성이 인정되므로, 적격성조사가 엄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음
- 문화관시설의 경우 적격성조사에서 준거사업의 성과품질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운영비 산정 시 기초 DB를 활용한 생애주기비용(LCC)을 활용하지 않은바 향후 개선이 필요함

### □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 정도

- 행복청 소관 학교시설의 경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행복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향후 교육청 이관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요함
- 또한 행복도시 내 아파트 입주 일정에 따라 BTL 사업일정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주민의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0년도 BTL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장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 2010년도 정부가 요구한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된다면 기왕에 확정된 정부지급금 36조 1,818억원에 7조 5,808억원이 추가되어 총 43조 7,626억원이 될 전망이다
- 하수관거시설의 경우 확정된 정부지급금만으로도 2016년도에는 환경부 세출예산의 5.3% 정도인데, 2010년도 한도액이 100% 협약된다면 매년 280억원의 정부지급금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재정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 예비한도액 분석

□ 2010년도 BTL 예비한도액은 1,177억원으로 전년대비 1,339억원(53.2%)이 감소된 규모임

- 2010년도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의 합계액 즉, 총한도액에서 지자체 자체사업 한도액을 제외한 규모의 5% 수준으로 책정됨

□ 예비한도액은 신규사업 추진이나 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BTL사업에 대해 국회가 사전에 총한도액을 의결하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예비한도액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비한도액은 국회에 한도액을 보고한 후 적격성조사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던 기존의 제도 하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적격성조사 이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가 변경됨

## IV. BTL사업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 한도액뿐만 아니라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BTL사업의 한도액만으로는 국회에서 BTL사업이 미래 재정부담을 얼마나 야기하게 될 것인지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BTL사업 한도액 심의에서는 한도액 자체뿐만 아니라 동 한도액 의결에 따라 향후 소요될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규모가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
-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마련 필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BTL사업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혹은 재정상태보고서를 통해 재무정보를 공개할 필요
  - 정부지급금 규모 제출 시 다음연도 규모 뿐 아니라 한도액 신청 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측되는 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및 연도별 지급예정액도 포함할 필요
- 예비한도액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 필요
  -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은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
  - 정부가 예비한도액으로 신규 시설사업 추진 혹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한도액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 차 례

---

---

요 약 / v

I. 서 론 / 1

1. 분석체계 .....	1
가. 분석의 배경 및 방법 .....	1
나. 분석의 대상 .....	3
2. 국회 심의절차 및 범위 .....	4
가. BTL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 .....	4
나. 2010년도 한도액안 국회심의 .....	8
3. 분석의 근거규정 .....	10

II. BTL사업 현황 / 11

1. BTL사업 개요 .....	11
가. BTL사업의 의의 .....	11
나. BTL사업 대상시설 .....	12
2. BTL사업 한도액 .....	16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한도액 .....	16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	18
3. BTL사업 정부지급금 .....	21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	21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기초한 정부지급금 예측액 .....	26

### I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 31

1. BTL사업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분석 .....	31
가. 2005~2009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	31
나.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 .....	34
2. 대상시설별 한도액 분석 .....	39
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	40
나. 민자사업 적격성 .....	40
다.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정도 .....	42
라.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rule) 고려 .....	44
3. 예비한도액 분석 .....	45
가.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	45
나. 예비한도액 집행 내역 .....	46
다. 2010년도 예비한도액 분석 .....	46

### IV. BTL사업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 48

1.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	48
가. 대상시설별 한도액 관련 .....	48
나. 총한도액 및 예비한도액 관련 .....	50
다.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	52
2. 한도액 심의 개선방안 .....	53
가.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 .....	53
나. 한도액 설정 근거 자료 .....	53
다. 회계처리기준 .....	54

[부록] I-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56

[부록] I-2.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 64

[부록] 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대상시설별 현황 / 67

[부록] III. 기획재정부의 「주무부처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작성양식 / 107



## 표 차례

[표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대상 .....	3
[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전후 조문대비 .....	6
[표 3] BTL 한도액안 증액 관련 법조문 비교 .....	9
[표 4]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	12
[표 5]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	13
[표 6]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	15
[표 7] 2005~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고시규모 .....	17
[표 8] BTL 사업 시설별·연도별 한도액 .....	18
[표 9]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	19
[표 10]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	20
[표 11] BTL사업 중 임대료와 운영비 .....	21
[표 12]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 .....	22
[표 13]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규모 .....	23
[표 14]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BTL사업 운영비 규모 .....	25
[표 15] 2010년도 신청된 BTL사업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	26
[표 16]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	27
[표 17]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예측치 .....	28
[표 18]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	30
[표 19] 2005~2011년 BTL 한도액대비 협약체결 규모 .....	31
[표 20]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	32
[표 21] 각 시설의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	33
[표 22] BTL 한도 신청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35
[표 23]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예측 결과 .....	37
[표 24]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 결과 .....	39
[표 25]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	46
[표 26] BTL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종합 .....	52

[표 27] 한도액, 총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임대료 비교 .....	53
[표 28] 완공 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	54
[표 29] 완공 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	55

---

---

## 그림 차례

---

---

[그림 1] BTL사업 추진절차의 변경 전·후 비교 ..... 8

# I. 서 론

## 1. 분석체계

### 가. 분석의 배경 및 방법

정부는 2005년부터 BTL 방식<sup>1)</sup>의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여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잘 활용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인 학교시설·보건의료시설·문화시설·복합화시설까지 확대하였다.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미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는 BTL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종전에는 BTL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보고만 하였으나 국회의 사전 심의강화를 위해 의결로 변경된 바 있다(2008.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

#### ▣ BTL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BTL(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BTL사업 한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2009년은 국회가 BTL 한도액을 의결하는 첫 해이니 만큼 국회 차원에서 BTL 시설에 대한 조기투자의 편익, 장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의결함으로써 바람직한 민간투자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BTL사업 한도액안 의결 등 국회의 심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 및 BTL사업의 미래정부지급금 현황을 정리하고, 2010년도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도액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BTL사업 한도액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BTL사업의 추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BTL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미래 부채규모의 발생,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추진, 사업추진 및 관리 체계 미흡에 따른 부실 운영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게 유익한 자산이 조기에 확충되어 미래 재정건전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회에서 BTL사업 한도액을 의결하고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 및 지급금 산정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BTL사업 한도액을 의결함에 있어서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BTL사업의 개요와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안 현황 및 정부지급금 예측치를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과 관련된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한도액을 분석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2010년도 BTL 한도액 심의 시 고려해야 할 검토사항과 향후 BTL사업에 대한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나. 분석의 대상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명시된 7개 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 지자체 자체사업 규모 등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3조 5,788억원에 상당하다.<sup>2)</sup>

[표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대상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input type="checkbox"/>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2개소	4,5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3,573), 행복도시 학교시설(979)
② 군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대대, 관사 6,868세대, 간부숙소 9,987실	15,595	병영생활관(4,450), 군관사(7,148), 간부숙소(3,997)
소 계		20,147	
<input type="checkbox"/>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③ 과학관	2개소	531	김천 녹색미래과학관(346), 천안 홍대용과학관(185)
④ 도서관	1개소	147	부산 동래도서관(147)
⑤ 문화복합시설	1개소	380	청주 문화복합시설(380)
⑥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의성군 공립치매병원(119)
⑦ 하수관거시설	200km	2,217	포항시(934), 예천군(455), 영주시(421), 제주시(407)
소계		3,394	
<input type="checkbox"/> 예비사업 한도액		1,177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자체사업	85개소	11,070	시도 교육청의 학교 증개축
합 계		35,788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2)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서는 지자체 자체사업 1조 1,070억원을 제외한 2조 4,718억원을 총한도액으로 보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자체사업을 포함한 3조 5,788억원을 총한도액으로 보고 분석한다.

분석대상 BTL사업을 시행주체별로 분류하면,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2조 147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394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77억원, 지자체 자체사업은 1조 1,070억원이다.

한편, 대상시설별로 분류하면 학교시설 4,552억원, 군주거시설 15,595억원, 과학관 531억원, 도서관 147억원, 문화복합시설 380억원, 공공보건의료시설 119억원, 하수관거시설 2,217억원 등이다.

## 2. 국회 심의절차 및 범위

2010년도는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첫 번째 해이다. BTL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 조력하고자 근거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 국회의 심의 절차 및 심의범위에 대해 정리한다.

### 가. BTL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강화

#### (1) 근거법률 개정: 국회보고→국회의결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개정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방식 외에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방식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중장기 재정수요를 수반하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사업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며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이에 소요되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에 심의를 받게 되나, 국회는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적 심의를 못하고 예산으로 반영되는 정부지급금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그친다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또한 예산 외의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58조<sup>3)</sup>와 규범적으로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다.<sup>4)</sup>

이에 2008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의2). 뿐만 아니라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법 제24조의2).

---

3)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김충환의원등 10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800104)」, 2008. 6. 30. 제안.  
박기춘의원등 11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1800563)」, 2008. 8. 7. 제안.  
제안이유 참조.



[표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전후 조문대비

개정 전	개정 후
<p>■ BTL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p>	<p>「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이라 한다)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총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이하 “총한도액 등”이라 한다)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p> <p>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p>
<p>■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내역 국회 제출</p>	<p>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정부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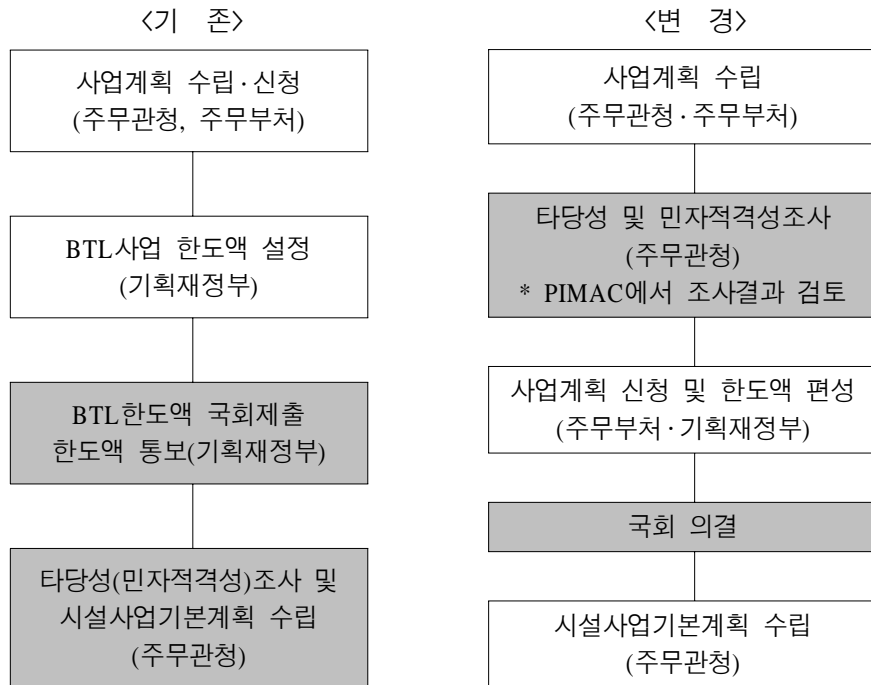
## (2) 법개정에 따른 BTL사업 추진절차 변경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BTL방식의 사업 절차도 변경되었다. 기존의 절차에서는 각 연도에 실시할 한도액(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한 다음,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2008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주무관청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한 다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동 검증결과에 기반하여 정부는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한도액에 대한 의결을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수립하게 된다. 정리하면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도액안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조사를 거쳐 한도액안을 편성하기까지 과정뿐만 아니라 편성된 한도액안이 적절한지를 심의한 후 한도액을 의결하게 된다.

이와 같이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를 수행한 이후 사업이 경제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하다는 검증을 거친 후 국회에 한도액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BTL사업 추진 절차가 변경된 만큼 향후 실시될 BTL사업에 대한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과거와는 달리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갖추어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BTL사업 추진절차의 변경 전·후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 민간투자기본계획 변경요지(2009. 2. 26)

## 나. 2010년도 한도액안 국회심의

### (1) 국회심의 절차

2008년 12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BTL사업 심의 절차는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에서 ‘한도액안’을 국회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sup>5)</sup>은 2009년 10월 1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1806220)를 부여받고, 현재 시설별 주무부처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다. 2010년 한도액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군주거시설), 교육과학

5)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의안번호: ZZ18068)도 함께 제출되었다(2009. 10. 1). 다만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과 달리 정부지급금은 2010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기술위원회(학교시설, 과학관시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시설),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보건의료시설), 환경노동위원회(하수관거시설), 국토해양위원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등 6개 위원회이다.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 등에는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국회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sup>6)</sup>

## (2) 국회심의 범위

BTL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심의 시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에 대한 삭감 및 사업규모 축소 등은 국회의 재정통제권에서 당연히 도출된다. 증액에 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국회가 BTL사업 한도액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증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3] BTL 한도액안 증액 관련 법조문 비교

BTL 한도액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임대형 민자사업 총한도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대상시설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8.12.31]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다만, 소관부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모두 심사할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달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문언 상으로는 한도액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나 해석상 한정적 열거적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한도액안도 여타 재정관련 의안의 경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다만 「국회법」<sup>7)</sup> 상 세출예산 심사 규정을 준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분석의 근거규정

정부의 BTL사업 한도액에 대한 분석의 근거 규정은 국회예산정책처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TL사업 추진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바, 동 정부지급금은 예산 외에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보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게 된다. 이에 BTL사업의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조력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

7) 「국회법」 제84조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1.5.31, 2002.3.7, 2003.2.4>

## II. BTL사업 현황

### 1. BTL사업 개요

#### 가. BTL사업의 의의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동 시설을 약정기간(10~30년) 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건설-이전-임대)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민간사업자가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달리 BTL사업의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 위험을 부담하며, 시설의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가 부담한다.

BTL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정부지급금<sup>8)</sup> 방식으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다. 이 중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는 사업위험도와 자금조달비용 등이 감안된 수익률을 반영하여 분할·지급한다. 운영비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대가로서 사전에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기초로 정부가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여 조정·지급한다.

---

8)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며, 임대료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임대형 민자사업 표준실시 협약, P.8).

[표 4]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요

<p>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이 자기자금으로 시설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며, 정부는 동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임차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li> <li>○ 금융기관·건설사·시설운영사 등이 사업시행법인(SPC)을 설립해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유지보수)을 일괄 담당</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BTL사업의 구조&gt;</p> <pre> graph LR     SPC["SPC (금융기관+ 건설사+ 운영전문사 등)"] -- "시설 기부채납" --&gt; Gov["정부 (국가, 지자체)"]     Gov -- "관리운영권/ 정부지급금" --&gt; SPC     Gov -- "공공 서비스" --&gt; User["이용자 (일반국민)"]     User -- "사용료(필요시)" --&gt; Gov     </pre>
<p>건설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용을 SPC에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 + 운영비용</li> <li>○ 시설임대료 :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li> <li>- 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 + 가산율[<math>\alpha</math>] (가산율은 장기투자 프리미엄, 건설·운영 위험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별 사업별로 사업자 경쟁 등을 통해 결정)</li> <li>○ 운영비용 : 민간이 유지·보수 등 시설운영을 담당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분</li> <li>○ 정부지급금은 시설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성과평가(Performance)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li> </ul>

자료: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P.360.

## 나. BTL사업 대상시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유치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부족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다. 초기 민간투자대상

사업은 주로 도로·항만·철도 등 산업기반시설 위주였고, 사업방식 또한 민간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직접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민간투자대상 및 사업방식만으로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문화·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보건의료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9개가 기존의 산업기반시설 중심의 민간투자대상에 추가되었다. 또한 그동안 재정사업으로만 추진되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으로 BTL방식이 도입되었다.9)

[표 5]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분야	2005년 이전 35개 시설 (주로 BTO 대상)	2005년 이후 9개 추가 (주로 BTL 대상)
도로(3)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지능형 교통체계	
철도(3)	철도, 철도시설, 도시철도	
항만(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1)	공항시설	
수자원(3)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수도	
정보통신(4)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리정보체계	
에너지(3)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경(5)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오물)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	
유통(3)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문화관광(9)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도시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8개)	문화시설
교육(1)		학교시설
국방(1)		군주거시설
주택(1)		공공임대주택
보건복지(3)		아동보육시설, 노인주거·노인의료, 공공보건의료
산림(2)		자연휴양림, 수목원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작업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7. 3. 20, P.24.

9) 대한민국정부, 「2005 ~ 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P.359.



2005년 이후 연도별 BTL사업 한도액에 포함된 대상시설 사업의 유형은 다음 [표 6]과 같다.

BTL도입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시설은 군주거시설, (대)학교 시설, 하수관거 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노인복지시설 등 보건복지시설, 초중등학교시설 등 6개 유형이다.

2010년 사업신청에서 제외된 유형으로는 기능대학시설, 철도시설, 군정보통신망, 재난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철도시설의 경우 2009년까지 BTL사업으로 수행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BTL 대상시설에서 제외되었다. 군정보통신망, 재난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경우 2007년에만 사업이 수행되었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한도액만 설정되었을 뿐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이 고시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중단시킨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사업 중 군주거시설과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인 하수관거시설의 경우 사업의 대상 시설이 거의 완료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에는 생활기반시설인 국가보조 지자체사업인 문화관, 도서관, 공공의료시설, 과학관 등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인 문화관,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주무관청인만큼 사업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뿐 아니라 생활기반시설의 조기도입과 민간의 창의성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과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중복투자의 우려, 시설의 활용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운용의 경직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6] 연도별 BTL사업 대상시설 유형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안
국가 사업	군인아파트 신축	군인아파트 신축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숙소	군인아파트 및 독신자숙소	군 주거시설	군 주거시설
	사병내무반 신축	사병내무반 신축	사병내무반	사병내무반		
	기능대학시설 신축	기능대학시설 신축	기능대학 시설			
	일반철도 건설	일반철도 건설	일반철도	철도	철도시설	
	국립대 기숙사 신축	국립대 기숙사 신축	국립대학교 시설	대학시설	학교시설	학교시설
			군 정보통신망			
			재난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국민임대주택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	노후 하수관거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노후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시설	하수관거
	문화회관 신축 도서관 신축 박물관·미술관 신축 복합시설 <sup>1)</sup>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신축 박물관·미술관 신축 복합시설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복합 문화시설	복합 문화시설 박물관	문화복합시설 박물관 학교복합시설	문화복합시설 도서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복합노인복지시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복합 노인 복지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과학관 신축	과학관	과학관		과학관
지자체 자체 사업	초중등학교시설	초중등학교시설	초중등학교시설	초중등학교시설	초중등학교시설	초중등학교시설

주: 복합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자료: 연도별 임대형민자사업(BTL) 한도액.

## 2. BTL사업 한도액

###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한도액

정부는 2005년 BTL사업 투자한도를 확정하여 동년 5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sup>10)</sup> 2005년 추진할 BTL 대상사업은 17개 시설분야에 128개 단위사업, 총 6.2조원 수준이었다.<sup>11)</sup> 2005년에 사업 추진경험과 제도적 기틀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아 2006년 9월, 국회에 제출한<sup>12)</sup> BTL사업의 한도액은 전년보다 대폭 확대된 8.3조원에 이르렀다.<sup>13)</sup> 정부는 2007년 BTL사업 한도액으로 9.9조 원,<sup>14)</sup> 2008년도 BTL사업 한도액으로 5조원,<sup>15)</sup> 2009년도 BTL사업 한도액으로 6조 5천억원이라는 것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대상시설별 한도액 내에서 정부는 매년 각 BTL시설별로 고시하여 협약을 통해 BTL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BTL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추진된 BTL사업의 한도액 및 고시규모와 협약체결액(민간투자비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07년을 정점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에는 BTL사업의 협약 체결액이 저조함을 알 수 있다.

10) 기획예산처장관, 「2005년도에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2005. 5.

11)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5. 10, P.361.

12) 기획예산처장관, 「2006년도에 실시할 BTL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안)」, 2006. 9.

13) 대한민국정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6. 10, P.365.

14) 대한민국정부, 「2007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15) 대한민국정부, 「2008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표 7] 2005~201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고시규모(2009. 5. 기준)

(단위: 조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BTL 한도액	6.2	8.3	9.9	5.0	6.5
고시규모	3.8	7.2	5.2	2.9	-
협약체결	3.7	5.5	2.4	0.5	-

주: 1. 2005년 BTL사업 도입 후 2009년 3월말 기준 국방부의 군숙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환경부의 하수관거, 국토해양부의 철도시설,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시설사업 등이 포함된 규모임.

2. 2009년 통계는 한도액 규모이며, 5월말까지 협약체결 실적은 없음.

3. 협약체결액은 시설별 실시협약수를 기준으로 함(협약액 중 민간투자비 기준임).

자료: 1. 2005~2009년까지 기획예산처 및 대한민국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도액 자료.

2. 대한민국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7), P.133~134, P.166.

3. 기획재정부, 「연도별('05~'09) BTL사업현황(실고시액 기준, 단 '09년은 한도액 기준)」.

4. 개별 시설별 실시협약(2005~2008) 및 부처별 자료.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한도액 중 평균 60%의 사업을 고시하고 있다. 나머지 40%는 한도액 설정 1년 이내에 고시되지 아니한 관계로 BTL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sup>16)</sup> 한도액의 평균 40% 정도의 사업이 협약으로 체결된 바 있다.

BTL사업을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연도별 한도액은 2005~2009년까지 총 10개 사업에서 35조 9,418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05년 6조 1,969억원, 2006년 8조 3,147억원, 2007년 9조 9,288억원 등으로 최초의 3년 동안 한도액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BTL사업별 한도액을 살펴보면, 철도시설이 10조 9,114억원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초중등학교시설이 9조 6,867억원, 하수관거가 6조 4,422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의해,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해야 한다.

[표 8] BTL 사업 시설별·연도별 한도액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학교 시설	기숙사	철도	군 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복지 시설	예비 사업 한도액	기타	합 계
2005	10,000	26,462	4,565	4,358	6,770	-	398	6,363	1,362	1,691	-	61,969
2006	23,070	26,216	544	11,629	13,178	794	651	3,037	1,317	2,711	-	83,147
2007	13,070	14,000	3,324	51,977	5,393	227	707	922	903	4,061	4,704	99,288
2008	11,579	17,564	284	8,863	7,716	160	-	761	655	1,523	444	49,549
2009	6,703	12,625	1,054	32,287	7,283	-	-	1,948	1,049	2,516	-	65,465
합계	64,422	96,867	9,771	109,114	40,340	1,181	1,756	13,623	4,694	12,502	5,148	359,418

- 주: 1. 2007년 합계금액 중 기타는 군정보망 2,595억원, 재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2,109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2. 2008년 합계금액 중 기타는 국민임대주택 444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3. 2008년 기숙사는 한국기술교육대, 2009년 기숙사는 울산과기대 및 행복도시 학교시설을 포함한 금액임.  
 4. 2008년 문화시설은 학교복합시설 1,127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이에 따르면 한도액은 2009년 대비 45.3% 감소한 3조 5,788억원 수준(지자체 자체사업 포함)이다. 2009년과 달리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총한도액이 감소한 경향이 있다.

[표 9]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A)	2010년안(B)	증감(B-A)	증가율
총한도액	65,465	35,788	-29,677	-45.3
- 국가사업	41,216	20,147	-21,069	-51.1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9,108	3,394	-5,714	-62.7
- 예비한도액	2,516	1,177	-1,339	-53.2
- 지자체 자체사업	12,625	11,070	-1,555	-12.3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2010년 BTL사업 중점 투자분야는 학교·군주거시설·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띤다. BTL사업별 한도액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군주거시설이 1조 5,595억원, 초중등학교 신·개축 사업이 1조 1,07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학교시설 2개소가 4,552억원, 하수관거가 2,217억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10년도 한도액안의 특징은 국가사업이 2조 147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사업이 1조 1,070억원으로 3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보조지자체 사업은 하수관거 2,217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1천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이다.

[표 10]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단위: 억원)

대 상 시 설	사업규모	한도액
<b>【국가사업】</b>		<b>20,147</b>
① 군 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개 대대 등	15,595
② 학교시설	2개소	4,552
<b>【국고보조 지자체사업】</b>		<b>3,394</b>
③ 하수관거	200km	2,217
④ 문화복합시설	1개소	380
⑤ 도서관	1개소	147
⑥ 과학관	2개소	531
⑦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b>【예비한도액】</b>		<b>1,177</b>
<b>소 계</b>		<b>24,718</b>
<b>【지자체 자체 사업(초중등학교 신·개축)】</b>		<b>11,070</b>
<b>합 계</b>		<b>35,788</b>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09. 10

BTL사업은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소관부처인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부처가 관계한다.

2010년도 BTL사업 건수는 총 110건으로, 초중등학교시설이 85개로 건수가 가장 많으며, 군주거시설 14건, 하수관거 4건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업의 규모를 부처별로 보면,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사업이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BTL사업 정부지급금

#### 가. 2005~2009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2005~2009년 BTL 사업 추진에 따라 확정된 정부지급금 규모는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 36조 1,818억원이다. [표 11]의 총 BTL 연간지급금은 2009년 10월 현재 실시협약이 완료된 사업을 기준으로 2033년까지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시협약상의 금액이다.

[표 11] BTL사업 중 임대료와 운영비

(단위: 억원, %)

		하수 관거	초중등 학교 시설	기숙사	철도	군 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금액 (비율)	임대료	63,881 (85.15)	174,268 (85.88)	15,837 (66.66)	16,737 (93.24)	21,017 (86.04)	1,040 (72.22)	560 (68.63)	9,247 (67.80)	1,490 (80.54)	304,077 (84.04)
	운영비	11,144 (14.85)	28,647 (14.12)	7,922 (33.34)	1,213 (6.76)	3,409 (13.96)	400 (27.78)	256 (31.37)	4,390 (32.20)	360 (19.46)	57,741 (15.96)
	합 계	75,025	202,915	23,759	17,950	24,426	1,440	816	13,637	1,850	361,818

주: 학교복합시설 제외.

자료: 2009. 10. 현재 실시협약 완료 BTL사업기준.

BTL사업의 연간지급금을 임대료와 운영비와 구분하여 보면, 임대료가 30조 4,077억원이고 운영비가 5조 7,741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 정도이다. 운영비의 규모는 기숙사 시설의 경우 임대료의 33%로 규모가 가장 큰 반면, 철도시설의 운영비 규모는 전체 지급금의 6.76%에 불과해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설사업이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 국토해양부의 운영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특이한 것은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나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정부지급금의 약 30% 정도로, 산업기반 시설인 철도의 약 7%에 비해 운영비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교육 시설	기숙사	철도	군 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0
2007	0	1,225	0	0	11	0	0	0	0	1,236
2008	4	3,689	86	0	16	0	38	11	0	3,844
2009	30	5,531	513	0	23	0	38	91	14	6,240
2010	353	6,617	807	0	137	48	38	394	57	8,451
2011	2,127	7,524	1,202	372	725	74	38	631	88	12,781
2012	3,246	8,907	1,215	498	1,123	74	39	651	89	15,842
2013	3,751	10,707	1,191	882	1,203	72	39	655	89	18,589
2014	3,751	10,707	1,191	885	1,207	72	39	694	90	18,636
2015	3,751	10,707	1,191	886	1,209	72	40	694	90	18,640
2016	3,751	10,707	1,191	888	1,211	72	40	694	91	18,645
2017	3,751	10,707	1,191	889	1,213	72	40	694	91	18,648
2018	3,751	10,707	1,191	891	1,215	72	41	694	91	18,653
2019	3,751	10,707	1,191	893	1,217	72	41	694	92	18,658
2020	3,751	10,707	1,191	894	1,220	72	42	694	92	18,663
2021	3,751	10,707	1,191	896	1,222	72	42	694	92	18,667
2022	3,751	10,707	1,191	898	1,224	72	42	694	93	18,672
2023	3,751	10,707	1,191	900	1,227	72	43	694	93	18,678
2024	3,751	10,707	1,191	902	1,229	72	43	694	94	18,683
2025	3,751	10,707	1,191	903	1,232	72	44	694	94	18,688
2026	3,751	9,566	1,191	905	1,234	72	44	694	95	17,552
2027	3,751	7,385	1,341	908	1,225	72	45	694	95	15,516
2028	3,747	5,163	1,117	910	1,225	72	0	680	96	13,010
2029	3,722	3,908	469	912	1,219	73	0	622	92	11,017
2030	3,398	2,780	335	914	1,093	19	0	186	32	8,757

[표 12]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규모(계속)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교육 시설	기숙사	철도	군 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31	1,628	1,429	0	526	487	0	0	0	0	4,070
2032	505	0	0	398	77	0	0	0	0	980
2033	0	0	0	0	2	0	0	0	0	2
합 계	75,025	202,915	23,759	17,950	24,426	1,440	816	13,637	1,850	361,818

주: 1. 임대료,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임.

2. 실시협약을 통하여 임대료와 운영비의 지급계획이 확정된 금액만 포함.

참조: 2009. 10. 현재 실시협약 완료 BTL사업기준(보건시설의 경우 2009. 5. 현재).

정부가 지급할 임대료는 초중등학교시설이 17조 4,268억원, 기숙사 시설이 1조 5,837억원이고, 하수관거시설이 6조 3,881억원, 문화시설이 9,247억원으로 전체 임대료 지급액 30조 4,077억원의 86%에 이른다. 즉 상기 4개 시설의 임대료가 총 임대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지급금 중 임대료 지급액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원 정도이다.

[표 13]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규모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학교 시설	기숙사	철도	군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0
2007	0	1,141	0	0	10	0	0	0	0	1,151
2008	3	3,322	66	0	14	0	28	7	0	3,440
2009	25	4,763	376	0	20	0	28	61	11	5,284
2010	303	5,537	528	0	120	35	28	284	46	6,881
2011	1,804	6,392	806	352	630	54	28	459	73	10,598

[표 13]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규모(계속)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학교 시설	기숙사	철도	군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12	2,771	7,743	819	470	980	54	28	473	74	13,412
2013	3,194	9,172	795	835	1,049	52	28	473	74	15,672
2014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15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16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17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18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19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0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1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2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3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4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5	3,194	9,172	795	837	1,051	52	28	473	74	15,676
2026	3,194	8,031	795	837	1,051	52	28	473	74	14,535
2027	3,194	5,850	882	837	1,040	52	28	473	74	12,430
2028	3,191	4,409	686	837	1,038	52	0	459	74	10,746
2029	3,170	3,635	326	837	1,030	53	0	409	74	9,534
2030	2,891	2,780	218	837	930	12	0	0	28	7,696
2031	1,390	1,429	0	484	420	0	0	0	0	3,723
2032	423	0	0	367	71	0	0	0	0	861
2033	0	0	0	0	2	0	0	0	0	2
합계	63,881	174,268	15,837	16,737	21,017	1,040	560	9,247	1,490	304,077

참조: 2009. 10. 현재 실시협약 완료 BTL사업기준.

연도별 BTL사업의 운영비 지급액은 총 5조 7,741억 원이며, 2011년부터는 매년 약 2천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운영비는 하수관거시설 1조 1,144억 원, 초중등학교시설 2조 8,647억 원으로, 2개 시설의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 5조 7,741억 원 중 65%를 차지한다. 하수관거시설의 운영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지급될 전망이다.

[표 14] BTL사업 시설별·연도별 BTL사업 운영비 규모

(단위: 억원)

연도	하수 관거	초중등 학교 시설	기숙사	철도	군 시설	과학관	폴리텍 대학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0
2007	0	84	0	0	1	0	0	0	0	85
2008	1	367	20	0	2	0	10	4	0	404
2009	5	768	137	0	3	0	10	30	3	956
2010	50	1,080	279	0	17	13	10	110	11	1,570
2011	323	1,132	396	20	95	20	10	172	15	2,183
2012	475	1,164	396	28	143	20	11	178	15	2,430
2013	557	1,535	396	47	154	20	11	182	15	2,917
2014	557	1,535	396	48	156	20	11	221	16	2,960
2015	557	1,535	396	49	158	20	12	221	16	2,964
2016	557	1,535	396	51	160	20	12	221	17	2,969
2017	557	1,535	396	52	162	20	12	221	17	2,972
2018	557	1,535	396	54	164	20	13	221	17	2,977
2019	557	1,535	396	56	166	20	13	221	18	2,982
2020	557	1,535	396	57	169	20	14	221	18	2,987
2021	557	1,535	396	59	171	20	14	221	18	2,991
2022	557	1,535	396	61	173	20	14	221	19	2,996
2023	557	1,535	396	63	176	20	15	221	19	3,002
2024	557	1,535	396	65	178	20	15	221	20	3,007
2025	557	1,535	396	66	181	20	16	221	20	3,012
2026	557	1,535	396	68	183	20	16	221	21	3,017
2027	557	1,535	459	71	185	20	17	221	21	3,086
2028	556	754	431	73	187	20	0	221	22	2,264
2029	552	273	143	75	189	20	0	213	18	1,483
2030	507	0	117	77	163	7	0	186	4	1,061
2031	238	0	0	42	67	0	0	0	0	347
2032	82	0	0	31	6	0	0	0	0	119
2033	0	0	0	0	0	0	0	0	0	0
합계	11,144	28,647	7,922	1,213	3,409	400	256	4,390	360	57,741

## 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에 기초한 정부지급금 예측액

2009년도 BTL 사업 한도액안만큼 시설별 사업의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예측되는 2010년도 정부지급금 규모는 약 7조 5,808억원이다. [표 15]의 총 BTL 연간 지급금은 2009년 10월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설별 한도액안을 기준으로 사업 종료일까지의 임대료와 운영비 예측치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였고,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예상액에 근거를 둔다.

[표 15] 2010년도 신청된 BTL사업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

		초중등 학교 시설	군주거 시설	하수관거 정비	학교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전문 과학관	공공보건 의료시설	합계
금액 (비율)	임대료	22,026 (90)	27,192 (84)	4,671 (83)	7,196 (75)	834 (58)	292 (73)	1,019 (59)	238 (72)	63,468 (84)
	운영비	2,463 (10)	5,078 (16)	954 (17)	2,343 (25)	596 (42)	106 (27)	708 (41)	91 (28)	12,339 (16)
	합 계	24,489	32,270	5,625	9,539	1,430	398	1,727	329	75,808

주 1. 초중등학교시설은 교육청 소관 및 행복청 소관을 포함한 금액임.

2. 학교시설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금액임.

자료: 2009. 10.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도액안에 기초하여 주무부처에서 제출한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한도액에 따라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임대료 및 운영비) 총 7조 5,808억원 중 군주거시설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3조 2,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공보건의료시설(공립치매병원)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329억원으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시작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확정된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약 1조 8천억원에 2010년도 한도액 신청된 시설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측치 약 3,700억원을 추가하여 매년 약 2조 1천억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6]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연도	초·중·등 학교시설	군·주거 시설	하수관거 정비	학교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전문 과학관	공공보건 의료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2013	1,109.40	0	0	0	0	19.92	63.2	16.47	1,208.99
2014	1,224.45	1,549	281.24	446	71.50	19.92	86.35	16.47	3,694.93
2015	1,224.45	1,554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32.51
2016	1,224.45	1,560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38.51
2017	1,224.45	1,566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44.51
2018	1,224.45	1,572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50.51
2019	1,224.45	1,579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57.51
2020	1,224.45	1,585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63.51
2021	1,224.45	1,592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70.51
2022	1,224.45	1,599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77.51
2023	1,224.45	1,606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84.51
2024	1,224.45	1,614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92.51
2025	1,224.45	1,621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799.51
2026	1,224.45	1,629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07.51
2027	1,224.45	1,637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15.51
2028	1,224.45	1,646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24.51
2029	1,224.45	1,654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32.51
2030	1,224.45	1,663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41.51
2031	1,224.45	1,672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50.51
2032	1,224.45	1,681	281.24	478.58	71.50	19.92	86.35	16.47	3,859.51
2033	115.05	1,691	281.24	478.58	71.50	0	23.15	0	2,660.52
2034	0	0	0	0	0	0	0	0	0
2035	0	0	0	0	0	0	0	0	0
합계	24,489	32,270	5,624.80	9,539	1,430.0	398.4	1727	329.4	75,807.62

주: 임대료,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임.

참조: 2009. 10.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설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 기준.

한도액 신청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지급하게 될 임대료는 교육청 및 행복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이 2조 2,026억원, 군주거시설이 2조 7,192억원, 하수관거시설이 4,671억원, 학교시설(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7,196억원으로, 이상 4개 시설의 임대료가 전체 임대료 지급액 6조 3,468억원의 96%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시작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 임대료 상환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확정된 BTL사업의 임대료 1조 5천억원에 2010년도 한도액 신청된 시설별 BTL사업의 임대료 예측치 3,100억원을 추가하여 매년 약 1조 8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예측치

(단위: 억원)

연도	초중등 학교시설	군주거 시설	하수관거 정비	학교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전문 과학관	공공보건 의료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2013	1,008.55	0	0	0	0	14.6	33.2	11.91	1,068.26
2014	1,101.30	1,360	233.565	360	41.7	14.6	50.94	11.91	3,174.015
2015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16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17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18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19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0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표 17]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임대료 예측치(계속)

(단위: 억원)

연도	초중등 학교시설	군주거 시설	하수관거 정비	학교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전문 과학관	공공보건 의료시설	합 계
2021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2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3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24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5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26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7	1,101.30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28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29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30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31	1,101.30	1,360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3.805
2032	1,101.3	1,359	233.565	359.79	41.7	14.6	50.94	11.91	3,172.805
2033	92.75	1,360	233.565	359.79	41.7	0	17.74	0	2,105.545
2034	0	0	0	0	0	0	0	0	0
2035	0	0	0	0	0	0	0	0	0
합계	22,026.0	27,192.0	4,671.3	7,196.0	834.0	292.0	1,018.8	238.2	63,468.31

참조: 2009. 10.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설별 BTL사업 한도액에 기초해 정부에서 예측한 임대료 규모

2010년도 한도액 신청된 시설별 BTL사업의 운영비 지급액은 총 1조 2,339억 원으로, 2022년부터는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초중등학교시설(2,463억원), 군주거시설(5,078억원) 및 학교시설(2,343억원) 등 3개 시설의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의 80%를 차지한다.

정부지급금이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시작하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도별 운영비 상환계획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확정된 BTL사업의 운영비 약 2,900억원에 2010년도 한도액 신청된 시설별 BTL사업의 운영비 예측치 약 600억원을 추가하여 매년 약 3천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8]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시설별·연도별 운영비 예측치

(단위: 억원)

연도	초·중·등 학교시설	군·주거 시설	하수관거 정비	학교 시설	문화복합 시설	도서관	전문 과학관	공공보건 의료시설	합 계
2005	0	0	0	0	0	0	0	0	0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0	0	0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0	0	0
2010	0	0	0	0	0	0	0	0	0
2011	0	0	0	0	0	0	0	0	0
2012	0	0	0	0	0	0	0	0	0
2013	100.85	0	0	0	0	5.32	30	4.56	140.73
2014	123.15	189	47.675	86	29.8	5.32	35.41	4.56	520.915
2015	123.15	195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59.705
2016	123.15	200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64.705
2017	123.15	207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71.705
2018	123.15	213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77.705
2019	123.15	219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83.705
2020	123.15	226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90.705
2021	123.15	232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596.705
2022	123.15	239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03.705
2023	123.15	247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11.705
2024	123.15	254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18.705
2025	123.15	262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26.705
2026	123.15	269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33.705
2027	123.15	278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42.705
2028	123.15	286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50.705
2029	123.15	294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58.705
2030	123.15	303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67.705
2031	123.15	312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76.705
2032	123.15	322	47.675	118.79	29.8	5.32	35.41	4.56	686.705
2033	22.3	331	47.675	118.79	29.8	0	5.41	0	554.975
2034	0	0	0	0	0	0	0	0	0
2035	0	0	0	0	0	0	0	0	0
합계	2,463.0	5,078.0	953.5	2,343.0	596.0	106.4	708.2	91.2	12,339.31

참조 1. 2009. 10.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시설별 BTL사업 한도액에 기초해 정부에서 예측한 임대료 규모.

2. 학교시설 운영비는 부속수익을 차감한 금액임.

### I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분석

#### 1. BTL사업 한도액 및 정부지급금 분석

##### 가. 2005~2009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 (1) 2005~2009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규모

본 절에서는 한도액과 정부지급금 규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각 연도의 시설별 한도액과 협약체결액을 분석하였다. 2010년 BTL 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해 발생할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표 19] 2005~2011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 규모(2009. 5.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BTL 한도액	6.2	8.3	9.9	5.0	6.5
고시규모	3.8	7.2	5.2	2.9	-
협약체결	3.7	5.5	2.4	0.5	-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59	66	24	10	-

주: 1. 2005년 BTL사업 도입 후 2009년 3월말 기준 국방부의 군숙소,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환경부의 하수관거, 국토해양부의 철도시설, 지자체의 초중등학교 시설사업 등이 포함된 규모임.

2. 2009년 통계는 한도액 규모이며, 5월말까지 협약체결 실적은 없음.

3. 협약체결액은 시설별 실시협약수를 기준으로 함(협약액 중 민간투자비 기준임).

자료: 1. 2005~2009년까지 기획예산처 및 대한민국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도액 자료.

2. 대한민국정부,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7), P.133~134, P.166.

3. 기획재정부, 「연도별('05~'09) BTL사업현황(실고시액 기준, 단 '09년은 한도액 기준)」.

4. 개별 시설별 실시협약(2005~2008) 및 부처별 내부자료.

## (2) 2005~2009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각 시설 및 연도별로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을 분석한 결과를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동 분석에서는 2009년도에는 한도액 신청이 있었으나 2010년 BTL사업 한도액안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철도시설 및 폴리텍대학 시설을 제외하였다.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은 2005년 63.5%, 2006년 72.9%, 2007년 57.5%, 2008년 21.6%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철도시설 및 폴리텍대학 시설을 제외한 BTL사업 한도액은 총 24조 6,829억원이었으며, 이중 2009년 5월 기준으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금액은 총 12조 3,586억원으로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은 50.1%에 이르고 있다.

[표 20]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한도액 (A)	57,213	70,867	46,604	40,686	31,459	246,829
협약체결액 (B)	36,358	51,657	26,794	8,777	-	123,586
B/A	63.5	72.9	57.5	21.6	-	50.1

주: 2010년도 BTL 한도액안이 신청되지 않은 철도시설 및 폴리텍대학 시설을 제외한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2005~2009년 중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의 비율이 50.1% 수준인 것은 정부가 신청한 BTL 한도액 중 실제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정부지급금이 발생하는 규모가 한도액 신청 당시 예측된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BTL사업 한도액 규모에 비해 협약체결액 규모가 적은 것은 BTL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유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BTL 개별 시설사업 고시 이후에도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충분한 사업계획 없이 BTL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에 대한 고시가 지연 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서 일정 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의 비율이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BTL 사업의 민간 참여 유인 정도가 연도별로 다르며, BTL 한도액 설정 이후 BTL 사업에 대한 고시와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당해연도 BTL 한도액이 신청된 사업이 차년도 또는 그 이후에 협약체결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의 차이는 연도별 뿐만 아니라 시설별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각 BTL 시설유형별로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각 시설의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하수 관거	초중등 교육 시설	대학교 시설	군 시설	과학관	문화 시설	보건 시설	전체
'05	한도액(A)	10,000	26,462	4,565	6,770	-	6,363	1,362	57,213
	협약체결액(B)	11,059	12,361	5,273	3,724	-	3,460	481	36,358
	(A) / (B)	110.6	46.7	115.5	55.0		54.4	35.3	63.5
'06	한도액(A)	23,070	26,216	544	13,178	794	3,037	1,317	70,867
	협약체결액(B)	19,603	22,041	553	7,157	454	1,342	507	51,657
	(A) / (B)	85.0	84.1	101.7	54.3	57.2	44.2	38.5	72.9
'07	한도액(A)	13,070	14,000	3,324	5,393	227	922	903	46,604
	협약체결액(B)	9,708	12,957	3,429	378	216	106	-	26,794
	(A) / (B)	74.3	92.6%	103.2	7.0	95.2	11.5		57.5
'08	한도액(A)	11,579	17,564	284	7,716	160	761	655	40,686
	협약체결액(B)	-	8,777	-	-	-	-	-	8,777
	(A) / (B)		50.0						21.6
'09	한도액(A)	6,703	12,625	1,054	7,283		821	457	31,459
	협약체결액(B)	-	-	-	-	-	-	-	0
	(A) / (B)								
전체	한도액(A)	64,422	96,867	9,771	40,340	1,181	11,904	4,694	241,681
	협약체결액(B)	40,370	56,136	9,255	11,259	670	4,908	988	123,586
	(A) / (B)	62.7	58.0	94.7	27.9	56.7	41.2	21.0	51.1

주: 전체에서 한도액 합계는 시설별 한도액, 예비한도액 및 기타한도액을 포함한 한도액 전체 금액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정리.

BTL 시설 유형 중 국립대학교 기숙사 건설 등이 포함된 대학교 시설 BTL 사업의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이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건시설과 군 시설이 각각 21.0%와 27.9%로 낮게 나타났다. 이외 BTL 시설 유형에서는 하수관거사업 62.7%, 초중등학교사업 58.0%, 과학관 사업 56.7%, 문화시설 41.2%의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나.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

### (1) 정부지급금 규모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

BTL사업 한도액은 한도액 자체로 향후의 정부지급금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BTL사업 한도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약체결액에 근거하여 정부지급금 규모가 결정된다. 따라서 BTL사업 한도액의 의미와 향후 재정운용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BTL사업 한도액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협약체결액에 반영될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2010년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비율과 이를 통한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를 대략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금액 비율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정부지급금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5~2009년 기간 중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자료에 근거하여 2010년 BTL 한도액 중 협약체결액으로 연결될 가능성(비율)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표 22]와 같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 따라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를 도출하였다.

시나리오는 2005~2009년 기간 중 2010년 BTL사업 한도 신청 시설유형별로 연도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을 분석하고, 각 시설의 연도별 최소 및 최대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과 해당 기간 중 전체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을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시설별로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의 비율을 별도로 산출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BTL사업에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사업 추진율을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표 22] BTL 한도 신청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구분	시나리오 기준	비고
시나리오 1	2005~2009년 BTL 시설유형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고 비율을 도출하고, 동 비율에 따라 2010년 해당 시설유형 BTL 한도액 중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 가정	
시나리오 2	2005~2009년 BTL 시설유형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소 비율을 도출하고, 동 비율에 따라 2010년 해당 시설유형 BTL 한도액 중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 가정	
시나리오 3	2005~2009년 전체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평균 비율을 도출하고, 동 비율에 따라 2010년 BTL 한도액 중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 가정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각 시설유형별로 2005~2009년 기간 중 시설유형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최대 협약체결액 비율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동 비율에 따라 해당 시설유형의 2010년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져 정부지급금이 발생할 것이라 가정에 따라 2010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각 시설유형별로 2005~2009년 기간 중 시설유형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최소 협약체결액 비율을 도출하고,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였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05~2009년 기간 중 전체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평균 비율을 도출하고,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0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및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였다.

상기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각 시설유형의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하고 2010년 시설별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체결 금액을 기준으로 2010년 BTL 사업 한도액 신청 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도출하였다. 2010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규모는 앞서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신청만큼 시설별 사업이 협약되는 경우 예측되는 2010년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통해 추산한 결과 약 7조 5,808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시나리오는 과거 BTL사업 추진 경험에 비추어 BTL사업이 한도액과 동일한 규모로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을 가지고 있다. 2010년 BTL사업 한도액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는 BTL사업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될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이 체결되는 금액 비율에 따라 정부지급금 규모가 동일한 비율로 변한다고 가정하고 각 시나리오별 정부지급금 규모를 산출하였다.

## (2) 시나리오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분석 결과

각 시나리오에 따라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협약체결이 예상되는 금액을 분석한 결과가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2005~2009년 중 각 연도의 시설유형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중 최고 비율에 따라 시설유형별로 2010년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 시나리오 1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10년 BTL사업 한도액 3조 4천억원 대비 2조 7천억원 규모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최소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에 따라 2010년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 가정한 시나리오 2에 따른 분석에서는 1조 2천억원 규모로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전체 BTL사업 한도액 중 협약체결액 평균 비율에 근거한 시나리오 3에 의한 분석에서는 협약체결액 규모가 1조 7천억원일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예측 결과

(단위: 억원, %)

시나리오		하수 관거	초중등 교육 시설	대학교 시설	군 시설	과학관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10년 한도액		2,217	12,049	3,573	15,595	531	527	119	34,611
시나 리오1	협약체결 예측액	2,452	11,151	4,127	8,578	505	287	46	27,146
	적용비율 (시설별 최고)	110.6	92.6	115.5	55.0	95.2	54.4	38.5	
시나 리오2	협약체결 예측액	1,647	5,628	3,632	1,093	304	61	42	12,407
	적용비율 (시설별 최소)	74.3	46.7	101.7	7.0	57.2	11.5	35.3	
시나 리오3	협약체결 예측액	1,134	6,161	1,827	7,975	272	269	61	17,699
	적용비율 (전체평균)	51.1	51.1	51.1	51.1	51.1	51.1	51.1	

- 주 1. 2010년 BTL 한도 신청액 합계는 예비사업 한도액 1,177억원을 제외한 금액.  
 2. 시나리오1은 시설유형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고비율 협약체결 가정.  
 3. 시나리오2는 시설유형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소비율 협약체결 가정.  
 3. 시나리오3은 전체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평균비율 협약체결 가정.

시나리오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에 대한 분석에서는 시설별 및 연도별로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과 이에 따른 실제 협약체결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협약체결액은 향후 BTL사업으로 인하여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지급금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바, BTL사업 한도액이 국가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BTL사업 한도액 신청액 중 실제 협약체결액으로 연결될 금액의 규모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설별로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이 다른 것은 BTL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참여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BTL 한도액 심사에서는 시설별 협약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도액 금액의 적절성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 (3)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대비 정부지급금 예측 결과

각 시나리오에 따른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규모는 향후 발생할 정부지급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표 24]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2010년 BTL사업 한도액이 모두 협약 체결될 것으로 가정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7조 5천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시나리오별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에서는 2010년 BTL사업 한도액 중 일부만이 협약체결로 연결될 것으로 가정하여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의 시설유형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고 비율에 근거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6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2의 시설유형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소 비율에 근거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2조 9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3의 전체 BTL사업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평균 비율에 근거한 정부지급금 규모는 3조 9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산출되었다.

시나리오별 BTL사업 한도액 대비 정부지급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설별로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 가능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정부지급금 규모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간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부지가 확보되었거나 연도내 확보가 확실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통해 사업 준비가 된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2010년도 한도액안으로 신청된 사업이 과거와 같이 협약체결 비율이 저조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지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심사에서 이와 관련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4] 시나리오별 한도액 대비 시설별 정부지급금 예측 결과

(단위: 억원, %)

시나리오		하수 관거	초·중·등 교육 시설	대학교 시설	군 시설	과학관	문화 시설	보건 시설	합 계
2010년 한도액		2,217	12,049	3,573	15,595	531	527	119	34,611
2010년 BTL 한도액 전액 협약체결시 정부지급금		5,625	24,489	9,539	32,270	1,727	1,828	329	75,807
시나 리오 1	협약체결 예측액	6,221	22,665	11,018	17,751	1,643	994	127	60,419
	적용비율 (시설별 최고)	110.6	92.6	115.5	55.0	95.2	54.4	38.5	
시나 리오 2	협약체결 예측액	4,178	11,439	9,697	2,262	987	210	116	28,889
	적용비율 (시설별 최소)	74.3	46.7	101.7	7.0	57.2	11.5	35.3	
시나 리오 3	협약체결 예측액	2,876	12,523	4,878	16,502	883	935	168	38,765
	적용비율 (전체평균)	51.1	51.1	51.1	51.1	51.1	51.1	51.1	

- 주 1. 2010년 BTL 한도 신청액 합계는 예비사업 한도액 1,177억원을 제외한 금액  
 2. 시나리오1은 시설유형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고비율 협약체결 가정  
 3. 시나리오2는 시설유형 연도별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최소비율 협약체결 가정  
 4. 시나리오3은 전체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평균비율 협약체결 가정

## 2. 대상시설별 한도액 분석

기획재정부의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선정기준인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민자사업 적격성,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정도, 재정 부담 관리기준 고려’ 등 4가지 세부기준에 따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검토한다.

## 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도 BTL사업선정기준으로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을 들고 있다. 세부기준으로 “BTL사업은 장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재정사업과 같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요구된다. 이에 일정규모 이상(총사업비 500억원, 국고보조 300억원 이상)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선행한다. 사업은 국가중장기계획, 정책방향, 국가 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연차별 계속투자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과학관 BTL사업의 경우 BTL사업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정부는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에 과학관 건립을 재정을 통한 종합과학관과 테마과학관, BTL 방식을 통한 전문과학관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재정을 통한 과학관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사업 추진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반면, BTL 방식의 전문과학관은 과학관 육성기본계획에만 사업 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sup>17)</sup>

비록 현재 운영 중인 BTL방식의 과학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운용에 시급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향후 BTL 과학관 사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급금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과학관에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 과학관 및 지방 테마 과학관에 대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BTL 과학관 추진이 향후 재정사업을 통한 과학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민자사업 적격성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도 BTL사업 선정기준으로 민자사업 적격성을 들고 있다. 세부기준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시보다 비용이 절감(VFM: Value for Money)될 경우에 한해 BTL로 추진한다. 민자사업

17) 우리나라의 과학관 수는 인구 68만명당 1개로 미국(14만명당 1개), 일본(16만명당 1개)에 비해 약 1/5 수준이다(교육과학기술부,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2009. 6).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와 함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은 적정규모로 Bundling하여 추진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2010년도 한도액이 신청된 학교시설, 문화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의 적격성조사가 적절했는지 검토를 요한다.

첫째, 학교시설의 경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시설 구축사업의 한도액 신청금액은 3,573억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3,310억원이다. 연구중심대학인 과학기술대학은 특수시설로서 일반건축물 공사단가의 일률적 적용은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기준에 의한 공사비 2,474억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실적단가 기준 공사비 2,855억원, 조달청 단가 기준 공사비 3,252억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각 세부시설별로 상기 단가 기준 중 최대 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 3,400억원 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세부시설별 최대 단가 기준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와의 비교에서만 한도액 신청 공사비가 낮게 나오고 있다. 향후 기본설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등을 통해 최적의 비용을 적용하여 재산출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한도액 심사에서 동 사업의 공사비가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관시설의 경우 적격성조사에서 준거사업의 성과품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운영비를 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 DB를 활용하지 않고 생애주기비용(LCC)을 산출하고 있다.<sup>18)</sup> 미술관이나 도서관 시설물은 목적, 운영계획이나 성과요구수준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비용 분석에서 유사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히 ‘면적당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였다.

적격성조사는 재정사업 및 BTL사업 추진 시 VFM의 산정·비교를 통한 정량적 분석과 서비스 질 제고 등의 정성적 분석으로 어느 사업방식이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정량적 VFM분석에서는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사

18)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DB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미비점은 보완 중이라고 설명한다. 건설사업은 시설유형이 같더라도 현장 여건에 따라 각 사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공법 등이 서로 달라 비용자료를 DB화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업에 대해 정부가 수행할 경우(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산출·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각 대안별로 설계비, 공사비, 운영비 등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산정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는 사전적으로 VFM이 확보된 사업만을 BTL방식으로 추진하나, 실제 총사업비, 임대료, 운영비 등은 정부와 민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적으로 확보된 VFM이 사후적으로도 충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BTL사업의 공사비 낙찰률, 운영비 등 관련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추후 사업에서 생애주기비용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sup>19)</sup>

셋째, 공공보건의료시설의 경우 복지시설 내 재정사업과 BTL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BTL사업의 비용절감(VFM) 효과가 적절히 나타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0년도에 신청된 공공보건의료시설의 경우 고령친화모델지역 내 시범사업으로 3개는 재정사업, 1개는 BTL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이다. 이 때 시범사업의 성공여부를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일원화가 필요할 것이다.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운영이 이원화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과거의 선례를 비추어 볼 때 BTL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격성조사에서 운영설비비에 ‘장비, 설비, 기자재’ 등이 포함되나, 미래에 이를 활용하게 될 병원운영사는 BTL 민간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시설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다.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의 준비정도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선정기준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준비가 갖추어졌는지를 들고 있다. 세부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간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부지가 확보되었거나 연도 내 확보가 확실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19)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BTL방식으로 추진된 파주교하도서관과 재정방식으로 추진된 파주중앙도서관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학교시설의 경우 2010년도 BTL사업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업의 준비가 충분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총괄하고 시도교육청(본청)과 지역교육청간에 BTL사업 업무를 분담한다. 사업의 건설·운영 단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건설 단계의 감독업무 또는 향후 20년간 운영관리 단계를 관리한다. 이에 초중학교 운영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하자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학교 및 사업시행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역교육청은 사업참여자 간 분쟁해결 및 조정을 한다. 따라서 기관 간 협력체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운영관리단계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청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소관 학교시설의 경우 현재 행복청이 교육청 업무를 맡고 있으나,<sup>20)</sup> 경험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청 및 시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한편 행복청 소관 BTL학교시설은 2009년도 한도액 신청에 9개교를 신청하였으나 2009년 10월 현재까지 고시를 하지 않아 2010년도에 사업신청이 된다고 해도 2010년 말에나 고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행복도시 내 아파트 입주 일정이 늦어질 경우 BTL 사업일정도 조정되어야 하므로 2010년도 BTL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BTL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 60조의2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시·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 라.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2%rule) 고려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선정기준으로 장래 재정부담 관리기준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들고 있다. 세부기준으로 “BTL추진으로 인한 장래 정부임대료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학교시설 및 하수관거시설의 경우 2010년도 BTL사업 선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관리가 적절했는지 검토를 요한다.

BTL사업은 사업 추진 초기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정운용상 여유가 증가하지만 정부지급금 도래기에는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정부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적 압박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비용지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매우 높아져 재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시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00개의 학교를 BTL사업으로 고시하였으며 이 중 69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지급금 지급에 따른 교육교부금 재정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50:50의 비율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 대상으로 신청된 초중등학교시설은 교육청 소관과 행복청 소관 시설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교육청 소관 BTL사업은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행복청 소관 BTL사업은 행복도시특별회계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미래에 행복도시 내에 교육청이 신설될 경우 교육청이 BTL사업을 관리하고 교육교부금에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획재정부는 행복청 소관 BTL사업과 교육청 소관 BTL사업을 통합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지급금 재정부담 규모도 행복청 소관과 교육청 소관 BTL사업 한도액안을 통합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투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2%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단계에서 정부지급금 상환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압박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즉 2016년 하수관거시설의 정부지급금 상환액이 환경부 세출예산의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1)</sup> 따라서 정부의 비용지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재정경직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연동되지 않을 경우 BTL사업이 재정부족 문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과의 연동을 통해 한도액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

### 3. 예비한도액 분석

#### 가. 연도별 예비한도액 현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예비한도액 규모는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하며,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1)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지급금이 상환되기 시작하여 2016~2025년 동안에는 매년 평균 3,751억원으로 상환부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도 환경부의 세출예산이 지방비까지 포함할 때 대략 5조 7,000억원이므로 매년 물가상승률(3%라고 가정)만큼 정부지출이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2016년도의 환경부 세출예산은 대략 7조 160억원이 된다. 따라서 2016년도의 정부지급금은 환경부 세출예산의 5.3% 정도 되는 것으로, BTL사업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세출예산의 2% 이내로 한다는 준칙을 크게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 「임대형 민자사업(BTL)평가 II」, 2009. 7; P.295. 참조).



[표 25]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안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9년(A)	2010년안(B)	증감(B-A)	증가율
총한도액(c+e)	62,949	34,611	-28,338	-45.0
- 국가사업(a)	41,216	20,147	-21,069	-51.1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b)	9,108	3,394	-5,714	-62.7
소 계(c=a+b)	50,324	23,541	-26,783	-53.2
- 지자체 자체사업(d)	12,625	11,070	-1,555	-12.3
- 예비한도액(e)	2,516	1,177	-1,339	-53.2
e/c	5.0	5.0	5.0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0년도 BTL 예비한도액을 [표 25]와 같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 즉, 총한도액에서 지자체 자체사업 한도액을 제외한 규모의 5%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 나. 예비한도액 집행 내역

2009년도의 경우 정부는 예비한도액 2,516억원 중 2,28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내역은 군주거시설 1,000억원, 철도시설 1,282억원이다. 군주거시설의 한도액 증액은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며, 철도사업의 한도액 증액은 기본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에 기인한다.

#### 다. 2010년도 예비한도액 분석

예비한도액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한도액이다. 2009년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한도액은 신규 사업 추진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2009년도까지는 BTL사업의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하는 추진체계였으므로, 정부가 BTL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2009년도까지는 사업계획 수준에서 추정된 BTL사업의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적격성조사 단계에서 보다 정밀하게 산정한 한도액은 국회에 보고한 한도액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비한도액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은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가 예비한도액으로 신규 시설사업 추진 혹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상시설에 추가하여 정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회의 총한도액 의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면, 국회가 의결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BTL 한도액에 대한 국회 의결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는 시설별 한도액 증액 및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예비한도액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V. BTL사업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

### 1.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BTL 총한도액은 2010년 BTL 사업으로 신청되는 개별 시설사업의 BTL사업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의 합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BTL사업 한도액 심의를 위해서는 개별 시설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BTL 사업으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과제이며,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근거가 분명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별 시설사업 자체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계획되었는지와 시설별 BTL사업 한도액과 함께 제출된 예비한도액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한다.

#### 가. 대상시설별 한도액 관련

##### (1)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시급성과 관련하여 BTL 사업은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 정부가 민간투자금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별 BTL 사업이 재정이 아닌 민간투자금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를 한도액 심의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도 BTL사업선정기준 중 시급성의 세부 기준으로 국가 투자우선순위에 부합하고, 연차별 계속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BTL 시설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검토는 각 사업이 관련 국가중장기계획 등 기존 계획에 제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업의 타당성 관련해서는 국가중장기계획, 정책방향에 적절한지를 정책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투자가 효율적인지 경제성분석(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점검한다. 이와 관련, 각 시설사업에 대한 BTL 한도액 심의에서는 각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의 수요추정 결과 및 수요추정 방식의 적절성,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 조사 결과와 조사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 (2) 민자사업 적격성

BTL 한도액 심사에서는 한도액을 구성하는 개별 시설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근거와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 시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을 재정투자자로 하는 것과 민간투자자로 수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고 돈의 가치(VFM)가 높은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010년도 BTL사업 선정기준으로 민자사업 적격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기준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시보다 비용이 절감될 경우에 한해 BTL로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시설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민자사업으로서의 적격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와 적격성 조사 자체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사업 선정 절차의 적절성

BTL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BTL 한도액을 산출하기 위해 개별 시설별로 사업의 타당성, BTL 사업으로서의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BTL 사업으로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BTL 사업 기획 단계에서 검토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가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수행되었고, 동 조사 결과가 개별 시설 사업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제시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 선정에 있어서 사업의 추진이 타당하며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무부처 혹은 주무관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면 사업의 조기추진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부지가 확보되었거나 연도 내 확보가 확실한 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나. 총한도액 및 예비한도액 관련

### (1) 정부지급금 규모

BTL사업 한도액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는 BTL사업 한도액 승인에 따라 향후 소요될 정부지급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BTL 한도액 승인은 이후 민간투자사와의 협약체결과 이에 따른 정부지급금 지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BTL사업 한도액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실제 협약체결액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각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을 분석한 결과, 2005년의 경우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이 63.5%, 2006년 72.9%, 2007년 57.5%, 2008년 21.6%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전 BTL 한도액 중 협약체결로 연결된 금액 규모는 BTL 한도액 심의에서 2010년 BTL 한도액이 향후 정부지급금 규모로 연결되는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5~2009년 시설 유형의 연도별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액 비율 중 최고 비율에 근거한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2010년 BTL 한도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는 6조원 규모로 예측되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최소 비율에 근거한 시나리오에서는 2조 9천억원 규모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0년 BTL 한도액이 모두 협약체결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정한 정부지급금 예측액 7조 5천억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BTL 한도액 심의에서는 한도액 자체뿐만 아니라 동 한도액 의결에 따라 향후 소요될 정부지급금 규모를 예측하고, 이러한 규모가 국가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정부담 관리기준인 “BTL추진으로 인한 장래 정부임대료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정부지급금이 정부의 재정관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 (2) 예비한도액 규모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예비한도액 규모는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하며,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에 지출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도 예비한도액 2,516억원 중 2,28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 BTL 예비한도액을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 즉, 총한도액에서 지자체 자체사업 한도액을 제외한 규모의 5%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사업계획 수준에서 추정한 BTL사업의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한 이후에 주무관청이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는 절차에 따라던 바, 적격성조사 단계에서 보다 정밀하게 산정한 한도액은 국회에 보고한 한도액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비한도액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였다.

그러나 2010년도 BTL사업의 한도액은 정부가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고,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되므로, 정부가 예비한도액으로 신규 시설사업 추진 혹은 대상시설별 한도액 증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대상시설에 추가하여 정부가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회의 총한도액 의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다면, 국회가 의결한 대상시설별 한도액의 구속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BTL 한도액

에 대한 국회 의결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는 시설별 한도액 증액 및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비한도액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본 보고서에 제시된 BTL사업 한도액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BTL 한도액 심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BTL 한도액 심의 검토사항 종합

구분	검토사항	검토 세부내용
대상 시설 사업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시설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가?</li> <li>↳ 개별 시설사업이 국가중장기계획, 정책방향, 국가 투자우선순위와 부합하고 있는가?</li> <li>↳ 개별 시설사업은 경제적 또는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가?</li> <li>↳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수요추정,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li> </ul>
	민자사업 적격성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시설사업이 재정사업이 아닌 BTL 사업으로 추진되는 근거와 이유가 명확한가?</li> <li>↳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사업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li> </ul>
	BTL 사업 선정 절차 및 사업의 준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시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졌는가?</li> <li>↳ KDI공공투자센터(PIMAC)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는가?</li> <li>↳ BTL사업 추진에 대해 주무부처 혹은 주무관청이 충분히 준비된 여건인가?</li> </ul>
BTL 한도액	BTL 한도액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대비 정부지급금 규모는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관리기준에 비추어 적절한가?</li> <li>↳ 총한도액 대비 협약체결예상액과 정부지급금 규모가 적절히 예측되고 있는가?</li> </ul>
	BTL 예비한도액 규모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TL사업 예비한도액을 선정한 이유가 타당한가?</li> <li>↳ 전년도 시설별 예비한도액 집행실적과 비교하여 예비한도액 규모는 적절하게 산출되었는가?</li> </ul>

## 2. 한도액 심의 개선방안

### 가. 정부지급금 규모 분석(법 §7의2 관련)

BTL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 대상은 ‘한도액’이나, BTL사업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정부지급금’이다. 그런데 정부지급금은 한도액 신청 이후 민간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확정된다. BTL사업 한도액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하는 취지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점임을 고려할 때, 한도액 심의 시에는 한도액으로 인한 향후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개략적으로라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BTL사업을 통해 향후 얼마나 많은 정부지급금이 초래되어 미래재정부담을 야기하게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BTL 한도액 대비 협약체결비율과 이를 통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분석하여 한도액안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7] 한도액, 총사업비, 총민간투자비, 임대료 비교

한도액	총사업비의 상한	
총사업비	건설비+부대비+운영설비비+운영준비금	
총민간투자비	총사업비+건설이자+물가상승률	
정부지급금	임대료	$\text{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운영비	-

### 나. 한도액 설정 근거 자료(법 §7의2 관련)

BTL 한도액은 국회 심의 신청을 위해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각 세부사업이 수요추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단계별로 적합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여 추진 여부가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BTL사업의 한도액안 뿐만 아니라 한도액 설정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도액의 적절성 여부를 국회가 심의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 BTL 한도액에 대한 의결을 요청할 경우 BTL 한도액에 대한 설정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BTL 한도액이 적절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 회계처리기준(법 §24의2 관련)

정부가 BTL사업의 한도액과 함께 시설별 미래 정부지급금을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연도 정부지급금 이외에 정부지급금 연도별 지급예상액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추진된 BTL사업에 따라 확정된 시설별 정부지급금에 대해 연도별 지급예정액과 총예정액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새로운 BTL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재정부담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급금 지급 일정 일체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는 BTL사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지침을 구비하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정상태표 혹은 재정상태보고서를 통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28] 완공 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단위: 원)

유동자산	XXX	유동부채	XXX
투자자산	XXX	장기차입부채	XXX
유형자산	XXX	장기차입금	XXX
<b>건설중인자산</b>	<b>XXX</b>	<b>BTL장기미지급금</b>	<b>XXX</b>
집기비품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무형자산	XXX	부채 총계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순자산 총계	XXX
자산 합계	XXX	부채와순자산총계	XXX

[표 29] 완공 후 재정상태보고서 BTL 표시 (안)

(단위: 원)

유동자산	XXX	유동부채	XXX
투자자산	XXX	장기차입부채	XXX
유형자산	XXX	장기차입금	XXX
건물 등	XXX	BTL장기미지급금	XXX
집기비품	XXX	기타비유동부채	XXX
무형자산	XXX	부채 총계	XXX
기타비유동자산	XXX	순자산 총계	XXX
자산 합계	XXX	부채와순자산총계	XXX

[부록] I-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대한민국정부

## 1. 제출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2010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등과 2009년도에 사용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 2. 제출내용

가.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2조 4,718억원임

-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2조 147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3,394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77억원임

나. 정부가 2010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 학교시설 : 4,552억원
- 군주거시설 : 15,595억원
- 과학관 : 531억원
- 도서관 : 147억원
- 문화복합시설 : 380억원
- 공공보건의료시설 : 119억원
- 하수관거시설 : 2,217억원

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은 1,177억원임

라. 2009년도 예비한도액 2,516억원 중 정부가 2009년도에 사용한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군주거시설 : 1,000억원
- 철도시설 : 1,282억원

### 3. 참고사항

가.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규모 전망

대상시설	사업규모	비고
○ 초·중등학교 시설	1조 1,070억원	시·도 교육청의 학교 신·개축 사업

나. 관계법령

(1) 헌법 제89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첨부>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 주요 내용 >

1. 2010년도 BTL 총한도액
2. 2010년도 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3. 2010년도 BTL 예비한도액
4. 2009년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 1.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10년도 총한도액은 '09년 5.3조원 대비 53.2% 감소한 2.5조원
  -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2조 147억원
  -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394억원
  - 예비사업 한도액은 1,17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A)	2010년(B)	증감(B-A)	(%)
총한도액	52,840	24,718	△28,122	△53.2
◇ 국가사업	41,216 (43,498)	20,147	△21,069 (△23,351)	△51.1 (△53.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9,108	3,394	△5,714	△62.7
◇ 예비한도액	2,516 (234)	1,177	△1,339	△53.2

주: ( )은 예비한도액 사용 후 한도액.

## 2.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2개소	4,5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3,573), 행복도시 학교시설(979)
② 군주거시설	병영생활관 55대대, 관사 6,868세대, 간부숙소 9,987실	15,595	병영생활관(4,450), 군관사(7,148), 간부숙소(3,997)
소 계		20,14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③ 과학관	2개소	531	김천 녹색미래과학관(346), 천안 흥대용과학관(185)
④ 도서관	1개소	147	부산 동래도서관(147)
⑤ 문화복합시설 <sup>1)</sup>	1개소	380	청주 문화복합시설(380)
⑥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119	의성군 공립치매병원(119)
⑦ 하수관거시설	200km	2,217	포항시(934), 예천군(455), 영주시(421), 제주시(407)
소 계		3,394	
□ 예비사업 한도액 <sup>2)</sup>		1,177	
합 계		24,718	

1)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 3.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예비한도액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은 1,177억원
  - 국가사업의 한도액 2조 147억원과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3,394억원의 합계액 2조3,541억원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

#### <참고>

-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4. 2009년도 예비한도액 사용내역

- 200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예비한도액 2,516억원 중 2,282억원을 사용하였음
  - 국방부 군주거시설의 신규사업 추진에 1,000억원 사용
  - 국토해양부 철도사업(대곡~소사 복선전철)의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1,282억원 사용

(단위: 억원)

구 분	당초 (A)	사용 (B)	잔액	사용률 (B/A, %)
예비한도액	2,516	2,282	234	90.7

(단위: 억원)

사용 내역	당초 한도액(A)	변경 한도액(B)	증감 (B-A)	
				(%)
◇ 국방부 군주거시설	7,283	8,283	1,000	13.7
◇ 국토해양부 철도사업	32,287	33,569	1,282	4.0
· 부전~마산	19,251	19,251	-	-
· 대곡~소사	13,036	14,318	1,282	9.8
◇ 예비한도액 사용(계)			2,282	

[부록] I-2.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대한민국정부

## 1. 제출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하여 2010년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임

## 2. 제출내용

가.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2010년도에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1,420억원임

나.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정부지급금		비고
		국가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합 계	141,978	79,485	62,493	
◇ 교육과학기술부	60,364	58,460	1,904	
◇ 국방부	16,889	16,889	-	
◇ 문화체육관광부	9,241	-	9,241	
◇ 보건복지가족부	1,185	-	1,185	
◇ 환경부	50,163	-	50,163	
◇ 노동부	4,136	4,136	-	

다.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정부지급금		비고
		국가사업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합 계	141,978	79,485	62,493	
◇ 학교시설	62,596	62,596	-	
◇ 군주거시설	9,306	9,306	-	
◇ 정보통신망	7,583	7,583	-	
◇ 과학관	1,904	-	1,904	
◇ 도서관	1,323	-	1,323	
◇ 학교복합시설	579	-	579	
◇ 문화복합시설	5,103	-	5,103	
◇ 체육시설	313	-	313	
◇ 미술관	1,923	-	1,923	
◇ 공공보건의료 시설	1,185	-	1,185	
◇ 하수관거시설	50,163	-	50,1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헌법 제89조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정부지급금 규모 국회 제출)

나. 예산조치 : 관련부처별로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음

## [부록] II. 2010년도 BTL사업 한도액안 대상시설별 현황

### 1. 군주거시설: 국방부 소관

#### 가. 전체 군주거시설 BTL사업 현황

국방부의 군주거시설 BTL사업으로는 병영생활관, 군관사, 간부숙소가 있다. 이중 현재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은 [부표 1]과 같이 총 27개 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착공이 시작된 사업은 17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운영이 개시된 사업은 공군 총주관사 1개시설이다.

[부표 1] 군주거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사업명	고시액	고시일	평가일	협약 체결일	착공일	운영 개시일
2005 (6)	공군총주관사	18,600	2005.05.11	2005.07.28	2005.09.06	2005.09.07	2007.04.03
	육군문산관사	29,400	2005.09.14	2006.01.06	2006.08.14	2009.02.11	
	국직동빙고관사	89,900	2005.10.27	2007.09.18	2008.10.30	2008.11.20	
	해군진해관사	143,700	2005.10.27	2006.03.24	2006.12.28	2007.11.27	
	공군대방동관사	39,000	2005.11.10	2006.04.25	2007.03.05	2007.09.05	
	육군용인관사	30,100	2005.11.10	2006.04.20	2007.06.11	2007.06.11	
	소 계	350,700					
2006 (23)	해군부산관사	29,300	2006.02.28	2007.04.26	2008.02.14		
	육군 전곡/포천관사	53,000	2006.07.28	2007.03.22	2009.07.24	2009.09.30	
	육군안양관사	42,500	2006.08.11	2007.03.22	2009.06.25		
	육군화천관사	67,200	2006.08.11	2007.03.21	2007.09.27	2009.08.25	
	해병대포항병영	66,700	2006.08.31	2007.09.04	2009.07.09		
	공군광주관사병영	50,400	2006.09.27	2007.04.11	2008.11.06		

[부표 1] 군주거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계속)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사업명	고시액	고시일	평가일	협약 체결일	착공일	운영 개시일
2006 (23)	공군예천관사병영	22,800	2006.10.31	2007.04.26	2008.02.29	2009.06.15	
	육군인제병영	50,700	2006.08.31	2007.06.27	2009.07.09	2009.07.10	
	공군사천관사병영	31,400	2006.10.31	2007.05.23			
	육군논산/익산관사	36,400	2006.10.31	2007.05.23			
	공군청원관사병영	76,400	2006.11.10	2007.06.15	2009.06.25	2009.10.5	
	육군파주관사	49,600	2006.11.24	2007.06.13	2009.07.24	2009.09.30	
	육군화천사내병영	45,400	2006.11.30	2007.07.25	2009.07.16	2009.09.18	
	육군홍천병영	48,300	2006.11.30	2007.07.25			
	공군원주관사병영	46,500	2006.11.30 (2009.03.03)				
	육군양주병영	69,100	2006.12.20	2007.08.14	2009.07.09	2009.10.15	
	육군연천병영	83,900	2006.12.20	2007.09.18	2009.07.24		
	육군가평양평병영	56,800	2006.12.20	2007.10.31	2009.06.25		
	육군김화관사병영	57,900	2006.12.29	2007.09.07	2009.04.29	2009.09.24	
	육군동송관사병영	88,800	2006.12.29	2007.10.02	2009.07.16		
	육군포천관사병영	90,600	2006.12.29	2007.12.25	2009.06.25	2009.09.30	
	육군인제관사병영	81,700	2006.12.29	2007.10.31			
	해병대김포병영	84,000	2006.12.29	2007.10.31	2009.07.09	2009.10.07	
소 계	1,329,400						
2007 (6)	서울김포관사	60,500	2007.11.30	2008.07.08	2009.07.24		
	대구포항관사병영	135,700	2007.10.31	2008.05.07	2009.10.01		
	공군강릉관사병영	34,000	2007.12.31	2008.05.16	2009.06.10		
	계룡대자운대관사	64,600	2007.9.28	2008.03.20			
	부산진주관사병영	62,900	2007.12.31	2008.06.04			
	육군화천양구병영	91,000	2007.12.31	2008.09.10			
	소 계	448,700					

정부는 2010년도에 실시할 군주거시설 BTL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도액을 신청하였는바, 병영생활관 7개소에 4,450억원, 군관사 1개소에 7,148억원, 간부숙소 7개소에 3,997억원을 신청하여 전체 한도액은 1조 5,595억원에 이른다.

2005년~2010년까지 추진되었거나 한도액이 신청된 군주거시설 BTL사업에 대한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한도액은 5조 5,935억원, 고시액은 3조 4,219억원이며, 민간사업비는 1조 273억원, 민간투자비는 1조 1,259억원으로 나타난다.

[부표 2] 군주거시설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연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운영중
2005	6,770	3,507	3,457	3,724	6	6	1
2006	13,178	12,795	6,453	7,157	23	18	-
2007	5,393	4,966	363	378	6	3	-
2008	7,716	7,716	-	-	12	-	-
2009	7,283	5,235	-	-	8	-	-
2010	15,595	-	-	-	-	-	-
합 계	55,935	34,219	10,273	11,259	55	27	1

주: 2009년 10월 현재 기준(단, 민간사업비 및 민간투자비는 협약사업 기준임).

자료: 국방부.

군주거시설 BTL사업은 27개 사업에서 실시협약이 이루어져 미래 정부지급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바 있으며, 미래상환 총금액은 2조 4,426억원이다. 이 중 임대료는 총지급액의 86%인 2조 1,017억원이고, 운영비는 3,409억원으로 총지급액의 약 14%를 차지한다.



[부표 3]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단위: 억원)

	2007~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2	합 계
임대료	164	4,761	5,255	5,255	5,582	21,017
운영비	23	706	821	879	980	3,409
합 계	187	5,467	6,076	6,134	6,562	24,426

주: 1. 2009년 10월 현재 기준.  
 2. 부가가치세 제외.  
 3. 임대료는 경상가격기준이며, 운영비는 불변가격기준.  
 자료: 국방부.

2010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되는 2010년도 한도액 신청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측치를 산정하면, 정부지급금(임대료 2조 7,192억원, 운영비 5,078억원)은 3조 2,270억원으로 추정된다.

[부표 4] 2010년도 군주거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2,719	6,797	6,798	10,878	27,192
운영비	384	1,065	1,234	2,395	5,078
합 계	3,103	7,862	8,032	13,273	32,270

자료: 국방부.

지금까지 확정된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2010년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군주거시설 BTL사업의 미래상환 전체 정부지급금(임대료 4조 8,209억원, 운영비 8,487억원)은 5조 6,696억원으로 추정된다.

### 나. 2010년도 군주거시설 BTL사업 현황

2010년도 신청된 군주거시설 BTL사업은 생활관 55개 세대(72동), 관사 6,868세대, 독신숙소 9,987세대로 구성된다. 군주거시설 BTL사업의 정부지급금은 100%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군주거시설 BTL사업 한도액 신청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부표 5] 군주거시설 BTL사업 2010년도 한도액 신청내역

(단위: 억원)

	단위사업명	사업규모	한도액
1	화천양구관사간부숙소병영	생활관 16동(12), 간부숙소 1,920실, 관사 190세대	2,000
2	문산관사간부숙소	관사 795세대, 간부숙소 848실	1,166
3	파주양주관사간부숙소	관사 400세대, 간부숙소1,624실	1,067
4	파주양주병영	생활관 11동(8), 간부숙소 110실	771
5	양천고양관사간부숙소	관사 725세대, 간부숙소 839실	1,092
6	포천운천연천관사병영	생활관1동(1), 관사 895세대, 간부숙소 1,280실	1,471
7	포천병영	생활관17동(10)	856
8	가평양주관사간부숙소병영	생활관 6동(4), 간부숙소486실 관사 580세대	1,050
9	광주인천병영간부숙소	생활관 15동(9), 간부숙소 280실	823
10	계룡대 관사	관사 1,514세대	1,575
11	수원관사간부숙소	간부숙소 700실, 관사 651세대	958
12	용산이천관사간부숙소	간부숙소 650실, 관사 450세대	728
13	춘천관사간부숙소	간부숙소 500실, 관사 500세대	720
14	영천대구관사간부숙소병영	생활관 6동(11), 간부숙소 750실, 관사 168세대	1,318
	계	생활관 72동(55), 관사 6,868세대, 독신숙소 9,987실	15,595

자료: 국방부.

## 2. 학교시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가. 초중등학교시설

#### (1) 전체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초중등학교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BTL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으로 나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교부금에서 조달하여 지방교육청에서 관리하고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에서 조달하여 행복청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유는 행복청 내에 교육청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행복청 내에 교육청을 신설하게 되면 재원조달과 관리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전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의 한도액, 사업비 현황 및 사업 진행 현황은 [부표 6]과 같다. 2005~2009년간 총 한도액은 7조 4,627억원이었으며, 총 176개 사업중 166개 사업에 대해 약 6조 4,970억원이 고시되었다. 166개 사업 중 125개 사업이 준공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갔으며 최초로 운영이 개시된 시기는 2007년부터이다. 학교 수로는 2005~2009년간 총 1,187개의 BTL 학교가 고시되었으며, 이중 63.5%인 778개교가 운영 중이다.

[부표 6] 2005~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번들 개수, 학교 수)

연도	한도액	고시액	총 민간 사업비	총 민간 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체결		운영개시	
					번들	학교	번들	학교	번들	학교
2005	1,390,557	1,336,424	1,181,922	1,236,122	38	222	38	222	38	222
2006	2,420,238	2,350,267	2,136,519	2,204,094	56	411	56	411	55	353
2007	1,667,100	1,368,400	1,458,746	1,295,672	42	318	42	318	36	218
2008	959,561	907,100	828,056	877,742	23	153	20	102	-	-
2009	788,247	277,389	-	-	7	22	-	-	-	-
합계	7,225,703	6,239,580	5,605,243	5,613,630	166	1,126	156	1,053	129	793

- 주: 1. 번들이란, 지역적 근접성, 교육청 관할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접한 약 3~5개 학교를 묶은 학교시설 BTL의 사업 단위임.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의 인접한 4개교가 모두 신·증축 대상이 되는 경우, '00교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과 같이 하나의 번들(사업)로 묶을 수 있음.
2. 위 표는 각 고시된 연도의 번들 및 학교의 2009년 현재 추진현황을 가로로 정리한 것임. 예를 들어, 2007년도 사업은 고시된 총 42개 번들 중 40개가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 중 37개 사업은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단계임을 나타냄.
3. 2009년도 사업규모는 17개 번들 확정되어 7개 번들사업 22개 학교사업 고시.
4. 연도별 한도액은 실제 추진된 사업 기준으로 재산정된 것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를 재정리(2009. 10. 현재).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의 시도교육청별 현황은 [부표 7]과 같다.<sup>22)</sup> BTL사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35.26%인 55건을 수행하였으며, 서울 12.18%인 19건, 경남이 7.69%인 11건 순서로 나타난다. 2005~2008년간 사업을 4건 이하로 추진한 지역은 강원, 충남, 전남으로 신도시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계획의 측면에서 초중등학교 신·증축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22)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의 장인 교육감이다.

[부표 7] 2005~2008년 시도교육청별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단위: 번들 수, %)

교육청명	교육시설 BTL사업 수(번들)						
	2005	2006	2007	2008	계(%)		
서울	2	12	4	1	19	(12.18)	
부산	1	2	3	1	7	(4.49)	
대구	1	1	2	1	5	(3.21)	
인천	3	3	2	-	8	(5.13)	
광주	1	3	1	1	6	(3.85)	
대전	4	1	1	-	6	(3.85)	
울산	3	2	1	1	7	(4.49)	
경기	12	15	17	11	55	(35.26)	
강원	1	1	2	-	4	(2.56)	
충북	2	2	2	-	6	(3.85)	
충남	1	1	2	-	4	(2.56)	
전북	2	4	1	1	8	(5.13)	
전남	2	1	-	-	3	(1.92)	
경북	1	3	1	1	6	(3.85)	
경남	2	5	3	2	12	(7.69)	
합계	38	56	42	20	156	(100.00)	

주: 시도교육청 실시협약 자료를 요청한 결과 실시협약 체결된 번들 수는 155개로 나타났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제출자료는 154개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자료: 시도교육청 실시협약체결 자료를 재정리.

## (2) 2010년도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현황

### (가)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현황

2010년도 신청된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은 신축 60개교에 8,570억원, 개축 25개교에 2,500억원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

교신축에 대해 재정사업과 BTL사업을 매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2012년까지 BTL사업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8]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추진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학교수)	16청	70교 <sup>1)</sup>	60교	60교	60교	120교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학교수)	616교 <sup>2)</sup>	64교	85교	85교	85교	-
■ 민간투자	54,440	8,920 <sup>3)</sup>	11,070	11,070	11,070	-
a. 학교수(신축)	459교	62교	60교	60교	60교	-
민간투자	43,733	8,718	8,570	8,570	8,570	-
b. 학교수(개축)	157교	2교	25교	25교	25교	-
민간투자	10,707	202	2,500	2,500	2,500	-
c. 학교수(체육관)	488교	-	-	-	-	-
민간투자	7,048	-	-	-	-	-

주: 1. 금융여건악화에 따라 재정사업 추진 확대.

2. 체육관 공사 제외.

3. (당초) 12,625 → (변경) 8,920억원(△3,705 : BTL사업 축소 및 재정사업 확대)

2010년도 신청된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정부지급금은 2조 2,188억원으로, 이 중 임대료가 2조 171억원, 운영비가 2,017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표 9] 2010년도 교육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3~2032)
정부지급금	22,188
■ 임대료	20,171
- 국고(①)	-
- 지방비	20,171
■ 운영비	2,017
- 국고(②)	-
- 지방비	2,017
국고부담(①+②)	-

\* 가정: 건설기간 24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물가상승률 3.0%, 부가세 포함, 연간운영비는 20년간 평균금액임, 운영비는 임대료의 10% 가정.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나) 행복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현황

행복청 소관의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60조의2(도시계획시설 건설 특례)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초중등학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교육자치기구가 설치되는 날 전까지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하게 된다.

2010년도 행복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은 행복도시 내 2013년 말 입주예정인 입주민 자녀의 교육환경마련을 위해 학교급별 11개교를 적기에 건립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사업규모는 총 11개교(부지 116,515㎡, 건축 73,971㎡)를 건립할 예정인데 동 사업의 한도액은 98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표 10] 2010년도 행복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한도액

구 분	고정고외 5교	같은초 외 4교
사업규모	- 부지 59,676m <sup>2</sup> , 건축 39,679m <sup>2</sup>	- 부지 56,839m <sup>2</sup> , 건축 34,292m <sup>2</sup>
BTL 한도액	- 52,634백만원	- 45,563백만원

자료: 행복청.

[부표 11] 2010년도 행복청 소관 초중등학교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계(2014~2033)	고정고외 5개교	같은초외 4개교
정부지급금	2,301	1,196	1,105
■ 임대료	1,855	963	892
- 국고(①)	1,855	963	892
- 지방비	-	-	-
■ 운영비	446	233	213
- 국고(②)	446	233	213
- 지방비	-	-	-
국고부담(①+②)	2,301	1,196	1,105

자료: 행복청.

고정고 외 5개교 및 같은초 외 4개교의 BTL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부표 12] 2010년도 행복청 소관 고정고 외 5개교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2010.03	2010.01	2010.02	2010.12	2011.06	2011.07	2011.07~11	2011.11	2012.04	2012.05

자료: 행복청.

[부표 13] 2010년도 행복청 소관 갈운초 외 4개교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2010.03	2010.01	2010.02	2010.12	2011.06	2011.07	2011.07~11	2011.11	2012.04	2012.05

자료: 행복청.

[부표 14] 2010년도 교육청 및 행복청 소관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3,211	5,507	5,507	7,802	22,026
운영비	347	616	616	884	2,463
합 계	3,558	6,122	6,122	8,686	24,48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및 행복청.

##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10년도 신청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BTL사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2008. 6)에 따라 학위과정(학·석·박사) 신설을 위한 관련시설 구축사업으로 한도액으로 3,573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구경북권의 연구거점 및 첨단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학위과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설내용은 학위과정에 필요한 교육연구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및 이에 따른 부속시설 신축으로 구성된다.

[부표 15] 2010년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BTL사업 민간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재정사업투자	-	-	-	-
■ 사업물량	-	-	-	-
○ BTL사업투자	179	1,214	1,357	823
■ 사업물량(단위)	192,182m <sup>2</sup> (1교)	-	-	-
■ 민간투자	179	1,214	1,357	823

주 1. PSC/불변가 현금지출액.

2. 부지매입비 500억원은 별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재원조달은 100%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향후 정부지급금은(2014~2033년) 9,539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는 임대료 7,196억원, 운영비 2,604억원의 합에 부속사업순이익 261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부표 16] 2010년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계	2014년	2015년 이후
정부지급금 합계	9,539	446	9,093
(국고 A+B-C)	9,539	446	9,093
○ 임대료	7,196	360	6,836
■ 국고(A)	7,196	360	6,836
■ 지방비	-	-	-
○ 운영비	2,604	96	2,508
■ 국고(B)	2,604	96	2,508
■ 지방비	-	-	-
○ 부속사업순이익(C)	261	10	251

주: 사업수익률 5.67%, 건설기간:2010~2013(42개월), 운영기간:2014-2033(20년), 건설이자:6.6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부표 17] 2010년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위과정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720	1,799	1,799	2,878	7,196
운영비	205	594	594	950	2,343
합 계	925	2,393	2,393	3,829	9,53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3. 하수관거시설: 환경부 소관

#### 가. 전체 하수관거시설 BTL사업 현황

환경부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리고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BTL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L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한도액 및 추진현황은 [부표 18]과 같다.

[부표 18]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운영중
2005	1,000,000	1,052,763	924,810	1,105,880	17	17	1
2006	2,306,600	2,158,699	1,706,530	1,960,260	29	29	-
2007	1,307,000	1,173,200	829,467	970,831	15	14	-
2008	1,157,900	1,050,500	-	-	15	-	-
2009	670,300	635,490	-	-	11	-	-
합계	6,441,800	6,070,652	3,460,807	4,036,971	87	59	1

주: 실시협약이 완료된 연도는 고시된 연도와 상이함.

자료: 환경부.

2005~2009년까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총 6조 4,418억원의 한도가 설정되었고, 2005~2009년 동안 87개의 사업에 대하여 총 6조 707억원이 고시되었다. 2005~2007년에 고시된 61개 중에서 60개의 사업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민간투자비 총액은 4조 370억원에 이른다. 현재 운영중인 곳은 2008년 11월에 준공된 진천군 1개이다.

[부표 19]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지급금(VAT포함)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계		6,835,712	4,495,124	2,356,147	1,245,205
2005년 사업	소 계	1,779,592	1,183,167	596,425	209,428
	청주시	51,837	20,734	31,103	6,470
	증평군	40,539	28,377	12,162	5,348
	진천군	39,892	27,924	11,968	7,889
	아산시	158,327	110,829	47,498	18,429
	논산시	58,315	39,421	18,894	24,900
	계룡시	66,068	46,247	19,821	6,072
	전주시	227,979	113,990	113,989	18,535
	정읍시	97,471	68,230	29,241	12,051
	목포시	92,538	64,777	27,761	5,557
	여수시	80,860	56,602	24,258	7,438
	담양군	49,265	34,486	14,780	9,495
	강진군	54,253	37,977	16,276	5,606
	경주시	165,791	116,053	49,737	27,071
	상주시	140,469	98,328	42,141	18,370
	영덕군	64,348	45,044	19,304	9,782
	마산시	231,786	162,250	69,536	11,234
	김해시	159,854	111,898	47,956	15,181
2006년 사업	소 계	3,306,248	2,096,423	1,225,384	713,212
	인천시	148,918	44,676	104,242	57,091
	대전시	224,600	67,380	157,220	46,452
	울산시	190,578	57,173	133,405	52,670
	파주시	144,569	101,198	43,371	27,256
	용인시	171,759	136,049	35,710	75,804

[부표 19]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지급금(VAT포함)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2006년 사업	홍천군	62,054	43,438	18,616	17,331
	강릉시	143,084	100,159	42,925	30,733
	보은군	35,309	24,716	10,593	9,658
	진천군	53,683	37,578	16,105	10,092
	음성군	87,688	61,382	26,306	18,233
	옥천군	44,229	30,960	13,269	13,276
	천안시	247,811	173,468	74,343	28,460
	금산군	65,340	45,738	19,602	16,190
	당진군	83,904	58,732	25,172	23,010
	군산시	143,285	100,300	42,986	32,032
	익산시	116,300	81,410	34,890	17,917
	김제시	53,984	37,788	16,196	9,414
	완주군	90,987	63,691	27,296	17,752
	목포시	130,210	102,037	43,731	15,558
	장흥군	67,600	47,320	20,280	5,550
	김천시	134,693	94,285	40,408	26,689
	상주시	93,179	65,225	27,954	17,266
	고령군	53,040	37,128	15,912	10,480
	진주시	133,296	93,307	39,989	26,570
	김해시	133,680	93,576	40,104	16,302
양산시	95,783	67,048	28,735	18,541	
제주(동)	95,024	47,512	47,512	16,991	
제주(읍면)	94,932	66,452	28,480	20,808	
서귀포시	166,729	116,697	50,032	35,086	

[부표 19] 2005~2009년 사업별 재원조달 현황(협약완료사업)(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지급금(VAT포함)			
		임대료			운영비 (지방비)
		소 계	국 고	지방비	
2007년 사업	소 계	1,749,872	1,215,534	534,338	322,565
	광주시	-	-	-	-
	평택시	254,730	168,936	85,794	32,815
	원주시	210,423	147,296	63,127	29,622
	충주시	174,766	122,336	52,430	46,735
	괴산군	67,754	47,428	20,326	13,692
	제천시	139,095	97,367	41,728	25,865
	보령시	71,789	50,252	21,537	15,685
	서산시	150,246	105,172	45,074	33,979
	서천군	59,759	41,831	17,928	12,218
	나주시	118,321	82,824	35,497	20,441
	포항시	-	-	-	-
	문경시	174,914	122,440	52,474	31,122
	칠곡군	160,268	112,187	48,081	25,481
	울진군	109,099	76,369	32,730	18,980
거창군	58,708	41,096	17,612	15,930	

주: 1. 경상가격 기준.

2. 국고는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를 통해 지출됨.

3. 2007년 사업중 광주시, 포항시의 경우 2009년 6월 현재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임.

자료: 환경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추진에 따라, 2005~2009년 동안의 재원 조달 현황은 [부표 19]와 같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되는 정부지급금 중에서 임대료는 6조 8,357억원이며, 그 중에서 국고에서 조달되는 것은 4조 4,951억원, 지방비에서 조달되는 것은 2조 3,5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총 1조 2,452억원으

로 전액 지방비에서 조달된다. 결국 총 정부 정부지급금 8조 809억원 중에서 3조 6,013억원이 지방비에서 조달되고, 국고 조달분은 4조 4,951억원인데 이것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를 통해 지출된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정부지급금 상환계획은 다음 [부표 20]과 같다. 정부지급금은 2006~2010년 동안에는 386억원에 지나지 않으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환되기 시작하여 2011~2015년 동안에는 1조 6,627억원에 이르고, 2026~2032년 동안에는 2조 502억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표 20]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부지급금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06~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2	합계
임대료	331	14,159	15,972	15,972	17,454	63,888
운영비	55	2,468	2,784	2,784	3,048	11,139
합 계	386	16,627	18,756	18,756	20,502	75,027

주: 1. 2009년 10월 현재 기준.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환경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은 [부표 21]과 같다.



[부표 21]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단위: 억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비	고시일	평가일	협약체결일	착공일	운영개시일
2005년	청주시	457	2005.06.10	2005.09.07	2006.01.27	2006.06.13	2010.02.13
	증평군	237	2005.06.03	2005.08.10	2006.02.09	2006.06.23	2010.08.23
	진천군	250	2005.06.10	2005.08.17	2006.01.09	2006.06.22	2008.11.22
	아산시	976	2005.06.07	2005.09.21	2006.04.13	2006.08.17	2011.03.17
	논산시	416	2005.06.07	2005.08.31	2005.12.29	2006.05.29	2010.07.29
	계룡시	340	2005.06.07	2005.08.24	2006.01.23	2006.07.12	2010.11.12
	전주시	1,175	2005.06.17	2005.10.12	2006.03.09	2006.04.25	2011.02.25
	정읍시	595	2005.06.14	2005.09.21	2006.02.10	2006.06.22	2010.12.22
	목포시	733	2005.06.08	2005.09.13	2005.12.30	2006.06.12	2010.06.12
	여수시	464	2005.06.07	2005.08.31	2006.03.13	2006.07.31	2010.08.30
	담양군	362	2005.06.10	2005.08.24	2006.02.08	2006.06.26	2010.08.05
	강진군	322	2005.06.03	2005.08.10	2006.01.09	2006.06.23	2010.03.23
	경주시	930	2005.06.08	2005.10.05	2006.07.27	2006.10.30	2011.02.30
	상주시	837	2005.06.07	2005.09.07	2006.01.17	2006.05.30	2010.11.30
	영덕시	368	2005.06.02	2005.08.17	2006.01.17	2006.06.10	2010.08.10
마산시	1,147	2005.10.06	2005.12.28	2006.11.07	2006.12.21	2011.12.21	
김해시	919	2005.06.13	2005.09.28	2005.12.30	2006.05.22	2011.01.22	
2006년	고령군	336	2006.10.31	2007.01.31	2007.06.29	2008.02.29	
	군산시	778	2006.10.02	2007.01.17	2007.06.28	2008.01.04	
	금산군	533	2006.10.04	2007.01.24	2007.06.28	2008.02.15	2011.04.14
	김천시	760	2006.10.31	2007.03.07	2007.06.29	2008.03.01	
	김해시	782	2006.10.02	2007.03.07	2007.06.28	2008.05.21	2011.10.20
	목포시	738	2006.10.04	2007.02.14	2007.06.29	2008.08.22	2012.01.21
	보은군	313	2006.10.02	2007.01.04	2007.06.29	2008.03.11	2010.05.10
	상주시	548	2006.11.02	2007.02.07	2007.06.29	2008.04.15	2011.07.14
	서귀포	873	2006.10.16	2007.03.14	2007.06.29	2008.02.29	
	양산시	784	2006.10.02	2007.02.07	2007.06.29	2008.04.7	
	옥천군	304	2006.09.29	2007.01.04	2007.06.28	2008.01.10	2010.08.09
	완주군	498	2006.11.03	2007.02.21	2007.09.14	2008.04.01	
	울산광역시	1,109	2006.11.03	2007.02.21	2007.07.10	2008.01.14	2011.01.18
음성군	630	2006.10.02	2007.01.24	2007.06.29	2008.01.10	2010.10.09	

[부표 21]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계속)

(단위: 억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비	고시일	평가일	협약체결일	착공일	운영개시일
2006년	익산시	696	2006.10.9	2007.01.31	2007.06.30	2008.04.11	
	장흥군	557	2006.10.9	2007.02.14	2007.09.19	2008.04.28	2010.10.27
	제주(동)	755	2006.10.16	2007.03.14	2007.06.29	2008.03.03	2011.07.04
	제주(읍면)	859	2006.10.13	2007.03.28	2007.06.29	2008.03.03	2011.03
	진주시	913	2006.09.29	2007.01.10	2007.06.28	2008.04.15	
	진천군	543	2006.10.02	2007.01.17	2007.06.28	2008.03.11	2010.11.10
	파주시	847	2006.11.01	2007.12.20	2008.04.02	2008.09.29	2011.07.28
	홍천군	482	2006.09.29	2007.03.28	2007.06.28	2008.04.26	2011.01.25
	인천광역시	1,224	2006.12.28	2007.04.23	-	2009.05	2013.01
	대전광역시	1,313	2007.05.10	2007.07.30	2007.12.28	2008.05.16	2011.11.16
	용인시	1,328	2006.07.31	2006.12.20	2007.10.04	2008.05.15	2010.11.15
	강릉시	770	2006.12.26	2007.04.02	2007.06.29	2008.04.25	2010.08.25
	천안시	1,429	2006.09.06	2007.01.10	2008.06.28	2008.05.23	2011.05.23
	당진군	500	2006.11.01	2007.02.26	2007.08.28	2007.12.31	2010.10.01
김제시	384	2006.11.16	2007.03.17	2008.09.12	2008.02.15	2009.10	
2007년	문경시	884	2007.06.28	2007.10.30	2008.08.14	2009.2.24	미정
	보령시	553	2007.06.29	2007.10.09	2008.06.30	2008.12.12	2011.12.12
	서천군	333	2007.06.28	2007.09.18	2008.03.28	2008.08.01	2011.02.01
	울진군	587	2007.06.29	2007.10.23	2008.06.30	2009.09.01	미정
	원주시	1,222	2007.06.29	2007.11.27	2008.08.01	2009.04.29	미정
	칠곡군	863	2007.06.29	2007.11.07	2008.07.31	2009.09.03	미정
	평택시	1,220	2007.12.10	2008.04.28	2009.07.21	미정	미정
	포항시	1,165	2007.11.26	2008.04.10	2009.09.09	미정	미정
	광주광역시	1,133	2008.10.31	2009.07.07	미정	미정	미정
	충주시	962	2007.08.20	2007.11.26	2008.5.27	2008.12.23	미정
	괴산군	368	2008.02.19	2008.05.21	2008.12.26	2009.04	2013.01
	서산시	706	2008.01.23	2008.04.28	2008.11.14	2009.03	2012.07
	거창군	362	2007.09.19	2007.12.12	2008.04.15	2008.11.26	2011.02.26
	나주시	620	2007.11.16	2008.02.26	2009.03.03	미정	미정
제천시	730	2007.10.10	2008.01.11	2008.07.03	2009.03.10	미정	

[부표 21]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계속)

(단위: 억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비	고시일	평가일	협약체결일	착공일	운영개시일
2008년	대전	1,063	2008.12.30	2009.05.12	협상중		
	광주	996	2008.12.23	2009.03.25	협상중		
	울산	1,145	2008.11.13	2009.03.12	협상중		
	김포	667	2008.12.26	2009.04.15	협상중		
	천안	579	2008.12.30	2009.04.15	협상중		
	홍성	578	2008.11.04	2009.02.26	협상중		
	진안	330	2008.11.24	2009.03.04	협상중		
	여수	517	2008.12.31	2009.05.28	협상중		
	경주	524	2008.11.25	2009.03.18	협상중		
	김해	518	2008.11.26	2009.03.12	협상중		
	양산	487	2008.10.28	2009.02.23	협상중		
	진주	848	2008.10.29	2009.03.04	협상중		
	통영	931	2008.11.24	2009.03.18	협상중		
	제주동	650	2008.12.23	2009.03.25	협상중		
제주읍면	912	2008.12.23	2009.04.01	협상중			
2009년	용인시	448	2009.09.15	2009.12월 예정			
	양주시	321	2009.08.31	2009.12월 예정			
	안성시	612	2009.08.31	2009.12월 예정			
	춘천시	979	2009.09.30	2010.2월 예정			
	제천시	522	2009.09.30	2010.4월 예정			
	익산시	791	2009.09.30	2010.02월 예정			
	김제시	680	2009.09.25	2009.12월 예정			
	목포시	343	2009.09.30	2010.4월 예정			
	포항시	772	2009.08.31	2009.12월 예정			
	영주시	754	2009.08.31	2009.12월 예정			
제주읍면	481	2009.09.30	2010.02월 예정				

2010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되는 정부지급금을 산정하면, 임대료 4,671억원, 운영비 954억원으로 총 정부지급금은 5,625억원으로 추정된다.

[부표 22] 2010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467	1,168	1,168	1,869	4,671
운영비	95	238	238	381	954
합 계	562	1,406	1,406	2,250	5,625

주: 1. 2009년 9월 말 현재 기준.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환경부.

2005~2009년까지 사업 중 확정된 하수관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2010년도 한도액만큼 협약이 체결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하수관거시설 BTL사업 미래상환 정부지급금(임대료 68,559억원, 운영비 12,093억원)은 80,652억원으로 추정된다.

#### 나. 2010년도 하수관거시설 BTL사업 현황

2010년도 신청된 하수관거 BTL사업은 포항시 하수관거사업, 영주시 하수관거사업, 예천군 하수관거사업 및 제주(읍면)하수관거사업으로 구성되며, 각기 한도액이 934억원, 421억원, 455억원 및 407억원으로 총한도액은 2,217억원이다.

동 시설은 40개월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625억원(임대료 4,671억원, 운영비 95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23] 2010년도 하수관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4~2033)
정부지급금	5,624.6
·임대료	4,671.3
- 국고(①)	3,248.7
- 지방비	1,422.6
·운영비	953.5
-국고(②)	-
-지방비	953.5
국고부담(①+②)	3,248.7

<가정> 건설기간 17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자료: 환경부.

#### 4. 문화관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가. 전체 문화관시설 BTL사업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 및 문화시설 관련 BTL사업(이하 ‘문화관 BTL사업’)으로는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이 있다.<sup>23)</sup> 이중 현재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은 미술관 1개 및 도서관 2개 복합문화시설 1개 등 총 4개이며, 이외 착공 단계 12개, 협약완료 단계 2개, 고시완료 단계 5개, 고시준비 단계 2개 사업이 있다.

23) 학교복합시설은 제외한 수치이다.

[부표 24] 2005~2009년 문화관 BTL사업 추진 현황

(2009. 9월 현재 기준)

구분	2005년사업		2006년사업		2007년사업		2008년사업	2009년사업
	운영	착공	착공	협약 완료	착공	고시 완료	고시 완료	고시 준비
문예회관	-	1	-	-	-	-	-	-
박물관/미술관	1	1	1	-	-	-	1	1
도서관	2	-	2	-	1	-	-	-
생활체육시설	-	-	-	1	-	1	-	-
복합문화시설	1	4	2	1	-	1	2	1
계	4	6	5	2	1	2	3	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운영 중인 문화관 BTL사업은 ‘제주도립미술관’, ‘파주교하도서관’, ‘인천시립도서관’,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4개 시설이다.

[부표 25] 2009년 현재 운영 중인 문화관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사업명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연간)	
		임대료(국비+지방비)	운영비(지방비)
인천시립도서관	2009.01.02	19	11.9
파주시교하도서관	2008.05.11	11	8.35
제주도립미술관	2009.02.01	16	6.8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2009.05.22	19	14.5

주: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었으며, 임대료는 경상가격기준이고 운영비는 불변가격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부는 2010년도에 실시할 문화관 BTL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도액을 신청하였는바, 문화복합시설로 ‘청주 문화복합시설(미술관, 역사박물관, 생활체육 시설)’ 380억원, 도서관시설로 ‘부산 동래도서관’ 147억원을 신청하여 총 한도액은 527억원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된 문화관 BTL사업에 대한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 총 한도액은 8,621억원, 고시액 규모는 6,985억원이며 민간사업비의 규모는 4,457억원, 민간투자비 규모는 4,908억원이다.

[부표 26] 문화관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운영중
2005년	6,363	3,986	3,162	3,460	10	10	3
	3,822	3,674					
2006년	3,037	1,568	1,197	1,342	7	7	-
	1,325	1,325					
2007년	922	939	98	106	3	1	-
	975	948					
2008년	761	1,038	-	-	3	-	-
	1,151	1,038					
2009년	821	-	-	-	-	-	-
	821						
2010년	527	-	-	-	-	-	-
	527	-					
합 계	12,431	7,531	4,457	4,908	23	18	3
	8,621	6,985					

주: 1. 2009년 9월 말 현재 기준임.

2. 한도액의 경우, 위칸은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아래칸은 기획재정부의 발표기준임. 고시액의 경우 위칸은 기획재정부의 발표 기준, 아래칸은 각 부처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년 9월 현재 문화관 BTL사업은 18개 사업에서 실시협약이 이루어졌고, 예상 미래상환 금액은 1조 3,637억원이다. 이 중 임대료는 총지급액의 67.8%인 9,247억원이며, 운영비는 4,390억원으로 총지급액의 32.2%를 차지한다.

[부표 27] 문화관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단위: 억원)

	2007~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2	합 계
임대료	352	2,243.75	2,243.75	2,243.75	2,163.75	9,247
운영비	144	1,072.25	1,072.25	1,072.25	1,029.25	4,390
합 계	496	3,316	3,316	3,316	3,193	13,637

주: 2009년 10월 현재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되는 2010년도 한도액 신청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측치를 산정하면, 정부지급금(임대료 1,126억원, 운영비 702억원)은 1,828억원으로 추정된다.

[부표 28] 2010년도 문화관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2	합계
임대료	138	282	282	436	1,126
운영비	76	176	176	275	702
합 계	203	450	450	666	1,8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지금까지 확정된 문화관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2010년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문화관 BTL사업의 미래상환 전체 정부지급금(임대료 1조 373억원, 운영비 5,092억원)은 1조 5,465억원으로 추정된다.



## 나. 2010년도 문화관시설 BTL사업 현황

2010년도 신청된 문화관 BTL사업은 ‘문화복합시설(미술관, 역사박물관,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2건으로, 한도액은 각각 380억 및 147억 등 총 527억 원이다.

[부표 29] 문화관 BTL사업 2010년도 한도액 신청내역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규모	한도액
1	문화복합시설	부지면적 6,199㎡, 연면적 12,881㎡, 지하 2층, 지상 4층	380
2	도서관	부지면적 9,375㎡, 연면적 6,170㎡, 지하 1층, 지상 4층	147
계			52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한도액으로 380억 원을 신청한 ‘문화복합시설’ BTL사업은 박물관, 미술관 및 생활체육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이다. 국가보조 지자체 사업인 ‘문화복합시설’ BTL사업은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임대료로 재정 지원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2010~2013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전한 후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부표 30]에서 볼 수 있듯이 1,429.79억 원(임대료 833.73억 원, 운영비 596.0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30] 2010년도 문화복합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4~2023)
정부지급금	1,429.79
·임대료	833.73
- 국고(①)	408.53
- 지방비	425.20
·운영비	596.06
- 국고(②)	-
- 지방비	596.06
국고부담(①+②)	408.53

주: 건설기간 48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부표 31] 2010년도 문화복합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83	209	209	334	834
운영비	60	149	149	238	596
합 계	143	358	358	572	1,43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문화복합시설’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32] 2010년도 문화복합시설 BTL사업 향후 추진계획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수립 <sup>1)</sup>	사업 승인 <sup>2)</sup>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1999	2010.6	2010.6	2010.9	2010.10	2010.11	2011.4	2011.5	2011.6	2011.7

주: 1. BTL사업 시행지침상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의미.

2.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도서관’ BTL사업은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으로 국비 40%와 지방비 60%가 임대료로 재정 지원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2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소유권을 해당 지자체에 이전한 후 20년간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부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398.37억원(임대료 291.93억원, 운영비 106.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33] 2010년도 도서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정부지급금	398.37
·임대료	291.93
- 국고(①)	116.77
- 지방비	175.16
·운영비	106.44
-국고(②)	-
-지방비	106.44
국고부담(①+②)	116.77

주 1. 건설기간 18개월, BTL임대료는 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2. 수익률 6.0% 전제, 임대기간 20년 적용, 연간임대료 =(총사업비×1.7437)÷2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부표 34] 2010년도 도서관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2	합계
임대료	44	73	73	102	292
운영비	16	27	27	37	106
합 계	60	100	100	139	3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도서관’ BTL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35] 2010년도 도서관 BTL사업 향후 추진계획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BTL 사업 신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 획수립	사업 승인 (구의회)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2009.1	2009.4	2009.4	2010.02	2010.06	2010.09	2010.09	2010.12	2011.03	2012.0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5. 과학관시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가. 전체 과학관시설 BTL사업 현황

과학관 BTL사업은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과 부합하는 테마 중심의 전문 과학관 건립을 목표로 200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문 과학관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사업을 BTL 방식을 통해 총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수행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된 과학관은 다음 표와 같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없다.

[부표 36] 연도별 과학관 BTL사업 추진 일정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연도	고시	평가	협약 체결	착공	운영
창원 청소년과학체험관	2006	2006.11	2007.03	2007.10	2008.06	2010.03
아산 장영실과학관	2006	2007.07	2007.11	2009.02	2009.05	2011.04
제천 한방생명과학관	2007	2007.11	2008.03	2008.09	2008.10	2010.06
사천 항공우주과학관	2008	2008.12	2009.09	2009.11	2010.06	2012.0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는 2010년도에 실시할 과학관 BTL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도액을 신청하였는바, ‘녹색미래과학관’ 346억원과 ‘전문과학관’ 185억원으로 총 531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2005년~2010년까지 추진되었거나 한도액이 신청된 과학관 BTL사업에 대한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총 한도액은 1,368억원, 고시액 규모는 837억원이며 민간사업비의 규모는 622억원, 민간투자비 규모는 670억원에 이른다.

[부표 37] 과학관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개)

연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운영중
2006	794	450	406	454	2	2	-
2007	227	227	216	216	1	1	-
2008	160	160	-	-	1	-	-
2009	-	-	-	-	-	-	-
2010	531	-	-	-	-	-	-
합 계	1,368	837	622	670	4	3	-

- 주: 1. 2009년 9월 말 현재 기준임.  
 2. 부가가치세 포함.  
 3. 민간사업비는 실시협약액 기준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관 BTL사업은 아산장영실과학관, 창원과학체험관, 제천과학관 등 3개 사업에서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미래 정부지급금 지급계획이 확정된 바 있다. 총 미래 정부지급금은 1,441억원이다. 이 중 임대료 지급 금액은 1,046억원, 운영비 지급 금액은 395억원으로 각각 총지급액의 72.55%와 24.45%를 차지한다.

[부표 38] 과학관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단위: 억원)

	2010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0	합 계
임대료	35	265	262	262	222	1,046
운영비	13	99	99	99	86	396
합 계	48	364	361	361	308	1,441

주: 1. 2009년 9월 말 현재 기준임.

2.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2010년도 한도액 신청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측치를 산정하면, 정부지급금(임대료 1,019억원, 운영비 708억원)은 1,727억원에 상당하다.

[부표 39] 2010년도 과학관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3	합계
임대료	135	255	255	374	1,019
운영비	101	177	177	253	708
합 계	236	432	432	628	1,72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지금까지 확정된 과학관 BTL사업 정부지급금에 2010년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된 과학관 BTL사업의 미래상환 전체 정부지급금(임대료 2,065억원, 운영비 1,104억원)은 3,168억원으로 추정된다.

#### 나. 2010년도 과학관시설 BTL사업 현황

2010년도에 BTL 한도액이 신청된 과학관 BTL사업은 ‘녹색미래과학관’과 ‘홍대용 전문과학관’사업이 있다.

2010년도 한도액으로 346억원을 신청한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은 첨단 u-IT기술과 친환경기술을 융·복합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친환경기술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생태과학체험관 사업이다. 녹색미래과학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가 건설에 재정지원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3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264억원(임대료 664억원, 운영비 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40]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3~2032)
정부지급금	1,264
·임대료	664
- 국고(①)	331
- 지방비	331
·운영비	600
-국고(②)	-
-지방비	600
국고부담(①+②)	331

<가정> 건설기간 30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체.

자료: 김천시.

향후 사업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41] 녹색미래과학관 BTL사업 향후 추진계획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 <sup>1)</sup>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2010.06	2009.04	2009.12	2010.02	2010.06	2010.07	2010.7~12	2010.12	2011.03	2011.4

자료: 김천시.

2010년도 한도액 185억원으로 신청한 ‘홍대용 전문과학관’ BTL사업은 홍대용 선생을 기념하는 전문과학관 조성을 통해 역사, 문화, 과학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 및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전문과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학생, 시민에 근대 천문학의 역사, 과학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과학사 연구소의 활성화로 우리나라 과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홍대용 전문과학관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가 건설에 재정지원되며, 운영비는 지방비 100%로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시설은 3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63억원(임대료 354.8억원, 운영비 108.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42] 홍대용 전문과학관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4~2033)
정부지급금	463
·임대료	354.8
- 국고(①)	177.4
- 지방비	177.4
·운영비	108.2
-국고(②)	-
-지방비	108.2
국고부담(①+②)	177.4

<가정> 건설기간 30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자료: 천안시.

향후 사업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43] 홍대용 전문과학관 BTL사업 향후 추진계획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 사업 기본 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2008.06	2007.11	2009.12	2010.02	2010.05	2010.06	2010.07~12	2011.01	2011.04	2011.05

자료: 천안시.

## 6. 보건복지시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 가. 전체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현황

보건복지가족부는 ‘공공의료기관 인프라 보강’, ‘국산한약재 살리기 운동’, 및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에 따라 보건·복지시설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시설 BTL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은 [부표 44]와 같으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없다.

[부표 44]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연도별 추진 일정 현황

(단위: 억원)

사업 연도	사업명	고시액	고시일	평가일	협약 체결일	착공일	운영 개시일
2005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152	2006.05	2006.10	2009.6	2009.09	2010.12
	강진의료원	350	2006.12	2007.12	2008.11	2009.10	2011.10
2006	우수한약유통 지원시설	454	2006.12	2007.05	2008.08	2009.07	2010.07
2007	화순노인전문 병원	150	2007.12	2008.05	2009.06	2009.09	2011.01
	충주의료원	519	2007.12	2008.05	2009.10	2010.01	2011.12
2008	부산시립노인 치매병원	86	2008.12	2009.04	2009.10	2010.03	2011.08
	의령군립노인 치매병원	37.3	2008.12	2009.04	2009.10	2010.03	2011.08
2009	영덕청소년 해양환경센터	372	2009.10	2010.01	2010.05	2011.01	2013.01
	김제농업생명 청소년수련원	220	2009.10	2010.01	2010.05	2011.01	2013.01
	서귀포의료원	400	2009.10	2010.03	2010.09	-	-
	함평 공립치매병원	57	2009.10	2010.2	2010.07	2011.1	2013.5
	광교신도시 청소년수련시설	55	09.5.18 사업포기	-	-	-	-
합 계		956	-	-	-	-	-

주: 2009년 9월말 현재 기준.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정부는 2010년도에 실시할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도액을 신청하였는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사업으로 119억원을 신청한 바 있다.

2005년~2010년까지 추진되었거나 한도액이 신청된 보건복지시설 BTL사업에 대한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및 민간투자비 금액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009년까지 총 한도액은 5,286억원, 고시액 규모는 2,249억원이며 민간사업비의 규모는 881억원, 민간투자비 규모는 988억원이다.

[부표 45]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연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	실시협약	운영중
2005	136,200	59,800	42,718	48,079	2	1	-
2006	131,700	45,454	45,430	50,710	1	1	-
2007	90,300	66,900	-	-	2	-	-
2008	65,500	52,849	-	-	2	-	-
2009	104,900	-	-	-	-	-	-
2010	11,900	-	-	-	-	-	-
합계	540,500	224,949	88,148	98,789	7	2	

주: 1. 2009년 5월 말 기준.

2. 부가가치세 제외.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한도액만큼 협약이 된다는 가정에 따라 예측되는 2010년도 한도액 신청사업의 정부지급금 예측치를 산정하면, 정부지급금(임대료 238억원, 운영비 91억원)은 329억원에 상당하다.

[부표 46] 2010년도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연도별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2011 ~2015	2016 ~2020	2021 ~2025	2026 ~2032	합계
임대료	36	60	60	83	238
운영비	14	23	23	32	91
합 계	49	82	82	115	32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나. 2010년도 보건복지시설 BTL사업 현황

2010년도에 신청된 보건복지시설 BTL사업은 ‘공립치매병원’사업이 있다. 2010년도 한도액으로 119억원을 신청한 공립치매병원 BTL사업은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 방지 및 치매노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이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립치매병원 5개가 추진 중이며 그 현황은 다음 [부표 47]과 같다.

[부표 47] 공립치매병원 추진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추진현황	총민간투자비	임대기간
① 신안군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협상중	152	2011.01~2030.12
② 화순노인전문병원	고시중	150	2011.01~2030.12
③ 부산시립노인전문 제4병원 건립	고시중	91	2011.03~2031.02
④ 의령노인전문병원건립	고시중	41	2011.03~2031.02
⑤ 함평군공립치매요양병원 건립	고시 준비 중	57	2012.01~2031.12
계		49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공립치매병원 BTL사업은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임대료로 지원되며, 운영비는 100% 지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동 시설은 2년 동안 민간에서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정부에서 민간에 지급해야 할 정부지급금 재정소요액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29억원(임대료 238억원, 운영비 9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부표 48] 공립치매병원 BTL사업 정부지급금 예측치

(단위: 억원)

구 분	정부지급금(2013~2032)
정부지급금	329.32
·임대료	238.12
- 국고(①)	119.06
- 지방비	119.06
·운영비	91.20
-국고(②)	-
-지방비	91.20
국고부담(①+②)	119.06

<가정> 건설기간 15개월, 수익률 5.96%, 임대기간 20년 전제, PSC기준, 불변가 기준  
 ※ 운영비는 운영비(불변)에 소비자물가상승율(2003-2007) 5년 평균 상승률 2.9%를 반영한 값임.

자료: 의성군.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부표 49] 공립치매병원 BTL사업 향후 추진계획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 계획 승인	착공
-	-	-	2010.06	2010.10	2010.11	2010.11~ 2011.05	2011.06	2011.08	2011.09

주: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자료: 의성군.

## [부록] III. 기획재정부의 「주무부처별 BTL사업 한도액 신청」 작성양식

### 시설 유형명

※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47개 시설유형 기준으로 작성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000 사무관 (☎ 02-1234-1234 )

### I. 2010년도 000 BTL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 ※ i) 현황, 필요성, 기대효과, 중장기 투자목표와 연계성 등을 기술
  - ii)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중장기계획, Master Plan 등 상위 계획 명시(예시) 노후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 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속 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 사업수행주체 :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 지원방식 :
  - ※ i) 보조사업(균특사업 포함), 융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융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 ii)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 지표 (2009)	1차목표 (2011)		2차목표 (2013)		최종목표 (2015)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							
▪							
▪							

※ i) BTL방식 추진시와 미추진시의 목표를 구분 기재  
ii) 최종 목표 달성년도 및 '13년 목표를 반드시 기술

재정 / BTL투자계획

- 
- 

※ 중장기 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역할분담, 추진방향 작성 (재정사업과 BTL사업의 추진방식 결정기준, 비율 등)

(단위: 억원)

구 분	2008까지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국고						
·지방비						
○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민간투자5」						

- ※ 1」다년도 공사는 시작년도(실시설계 착수기준)에 물량을 표기  
2」개소, km, 세대 등 의미가 분명한 단위로 표기(m2 등 물량유추가 어려운 단위 지양)  
3」재정으로 추진할 예산액 표기(BTL로 인한 토지보상비 등도 포함)  
    국고는 예산요구액과 일치  
4」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물량을 표기  
5」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연도에 총사업비(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 제외한 민간사업비)를 표기
- '08까지'에는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총민간투자비(물가 및 건설이자 반영)로, 협약전 사업은 고시금액으로 산정하여 합산
  - '09년'에는 한도액을 기입
  - '10년'이후에는 고시당시 추정 총사업비 표기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예산3」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6.0%(국고채+가산율), 임대기간 20년 전제

- ※ 1」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임대료 지급액(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연간임대료 = 총사업비(2」의 5」기입액) $\times$ 1.7437 $\div$ 20 $\times$ 1.1(부가가치세 포함))을 합산 표기
- 2」 운영비는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실시협약 완료사업은 협약상 연도별 운영비 지급액(경상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협약전 사업 또는 계획사업은 실시협약 체결된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첫 지급 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 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 3」 '09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표기
- 4」 지급할 총 정부지급금에서 '13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 표기

## 2010년 BTL한도액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단위: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사업		
②		

※ 1」예산으로 추진하는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비

2」주무부처 검토의견은 [양식 2] 2010년도 개별 사업별 BTL한도액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민간투자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적합성 여부, 적격성조사 결과, 사업의 중복성 여부, 사업준비의 충실성(예비 타당성조사 이행여부, 부지확보 여부, 기본계획 수립여부 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작성. 또한, 주무관청이 기초자치단체 사업인 경우 상급 광역자치단체의 의견도 함께 기술

### <참고> 2005~2009년 ○○○ BTL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사업			( )	'09.2~'28.2	( )	( )	( )
②							
계							

- ※ 1」고시중, 협상중, 협약체결, 공사중으로 구분하여 표기('09.6.30 현재 기준)
- 2」협약서에 기재된 총민간투자비, 경상가 기준
- 3」가산율과 협약체결시 수익률을 구분하여 표기
- 4」협약서에 기재된 총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5」협약서에 기재된 총 운영비(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 국고분 별도 표기
- \* 협약체결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총민간투자비(고시액기준)만 표기

## [양식 2] 개별사업별 BTL 한도액 설명자료

※ 작성요령 :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주무관청이 작성

### ① 사업명

주무관청(담당자) : 000시 000과 000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 목표지표  
※ 목표지표를 간단히 설명, 목표지표 선정이유 및 적정성 기술, 주요선진국과 비교 등 제시한 목표수준의 합리적인 이유 제시

	현재지표(2009)	목표지표(2000)
○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 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도 00시 00리 00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m<sup>2</sup>, 연면적 ○○m<sup>2</sup>,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m<sup>2</sup>)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m<sup>2</sup>) : 상설전시관 ○○m<sup>2</sup>, 기획전시관 ○○m<sup>2</sup>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m<sup>2</sup>), 기념품 판매점(○○m<sup>2</sup>)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 사업추진경위

- ※ i) 사업의 추진 배경, 논의 과정, 사업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 ii) 재정사업에서 전환된 경우 전환의 배경 및 전환효과 등을 기술

○ 사업수행주체 :

- ※ 민간투자법상 주무관청(당해 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표기

○ 지원방식 :

- ※ i) 보조사업(균특사업 포함), 용자사업 구분하여 보조(용자)비율을 적시 (BTL사업은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재정사업 국고 보조율을 준용하여 국고지원)
- ii)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보조비율을 적시
- iii) 비품비 등 현행 재정사업 추진시 국고보조대상이 아닌 비용에 대해서는 BTL 추진시에도 보조대상에서 제외

##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경우 그 결과를 명기

예타 실시연월	총사업비	B/C	AHP	비 고 (정책제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술)

### ○ 타당성조사 결과

- ※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의 경우에 그 결과를 요약작성

#### ■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연월	총사업비 (억원)	B/C	AHP	비 고 (기타 참고사항 기술)

#### ■ 정책적 분석결과(정책제언 포함)

- ※ 경제성분석없이 정책적 판단으로 추진이 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기술

### ○ 적격성조사 결과

- ※ 적격성조사 또는 간이적격성 조사결과를 기입

구 분	PSC		PFI		비 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설 투자 자 비 (A)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PSC 낙찰율: 00%
	4) 보상비				
	5) 부대비				
	타당성분석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각종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8) 총사업비( $\Sigma(1)\sim(7)$ )					
9) 물가변동비				물가변동율: 00%	
10) 금융비용				국공채이자율: 00% 건설이자율: 00%	
11) 총투자비( $\Sigma(8)\sim(10)$ )				PFI 자기자본 비율: 00%	
운영비합계(B)				PSC 연간운영비: 00억원 PFI 연간운영비: 00억원	
시설임대료(C)	해당 없음			사업수익율: 00% 연간 임대료: 00억원	
현금지출총액					
현재가치합계				재무적 명목 할인율: 00%	
VFM				적격성 있음 또는 없음	

##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 ○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참조

- 1」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설계 등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경우 유사시설 평당 단가 등으로 활용하여 산출
  - 복합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 2」설계비·부대비 등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비·설계비·부대비·운영설비비·제세공과금·영업준비금으로 구성
- 3」비품비 등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사업 추진시 보조대상이 아닌 비품비 등을 구분하여 기입
- 4」총민간사업비 : BTL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가 조달해야할 자금으로 민간의 창의가 발휘될 여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수행하지 않고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 사업타당성분석비 등)과 단순 자금차입 성격의 비용(이주대책에 따른 전세자금 등) 등 주무관청이 예산을 통해 조달해야할 자금을 제외한 금액



5]보상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매입비(건물 및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로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 기재

○ 재정소요전망

(단위: 억원)

구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00~'00)	
		2010년	2011년	2012년	...	연간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운영비4]							
- 국고②)							
-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00개월,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 전제.

- ※ 1]총민간사업비 중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여 투입할 연도별 투자액(총민간사업비를 건설기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
  - 건설기간에 따라 양식은 조정하여 사용
- 2]완공 다음 연도부터 균등분할 지급, 수익률 6.0%, 임대기간 20년을 가정하여 산정(연간임대료 = 총사업비×1.7437÷20×1.1(부가가치세 포함))
- 3]현행 시설투자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그대로 적용(복합시설인 경우 각 시설별 보조율에 10%p 가산)

- 4] 완공 다음 연도부터 지급함을 가정,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는 시설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 기추진중인 사업들의 운영비 항목 및 비중, 재정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고산정
- 연간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표준비용 기준(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
  - 총운영비는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를 산정하고 다음연도부터는 물가상승률 3.0%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경상가격)하여 합산

### <연간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 ※ i) 첫 지급연도 운영비(표준비용) 기준으로 작성
- ii) 연간운영비와 구성 내역의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기재

###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 -
경제·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절 3.BTL사업 시행방안 (1)대상사업의 선정”  
참조하여 기술

- 1] 법적 적합성 : 민간투자대상시설 해당여부, 국민 기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시설 여부, 준공후 국가지자체로의 귀속여부 등
- 2] 경제·재무적 적합성 :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민간사업자의 수익실현 가능성 등
- 3] 계획의 구체성 : 당해 연도내 시행가능 여부, 예타 등 사전 필수절차 이행 여부, 부지확보/기본계획 수립 여부, 사업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 준비 충실성
- 4] 기타 사항 : 복합시설화 가능성, 대체시설 활용 등 대안의 존재 여부, 공공성의 훼손가능성 등

####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	사업 승인 <sup>1)</sup>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 계획서 접수	사업 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 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 1]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또는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일 표기. 다만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인 경우 의회 승인일 별도 표기.

### [양식 3] 2010년도 BTL사업 정부지급금 규모 내역서

※ 작성요령 :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의 2010년도 정부지급금 규모를 함께 제출

#### 국가사업(2010년도)

(단위: 억원)

구 분			임대료			운영비			합계 (A+D)	비 고
			계 (A)	국고 (B)	지방비 (C)	계 (D)	국고 (E)	지방비 (F)		
국 가 사 업	군주거 시 설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철도 시 설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국립대 기 숙 사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기능대 시 설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 협약체결, 공사중, 운영중으로 구분하여 비고에 표기('09.6.30 현재 기준)  
임대료 및 운영비는 '10년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을 경상가로 명기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2010년도)

(단위: 억원)

구 분			임대료			운영비			합계 (A+D)	비 고
			계 (A)	국고 (B)	지방비 (C)	계 (D)	국고 (E)	지방비 (F)		
국 가 보 조 지 방 자 치 단 체 사 업	하수 관거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청소년 수련원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문예 회관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도서관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박물관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미술관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과학관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노인 치매 병원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지 방 의료원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 협약체결, 공사중, 운영중으로 구분하여 비교에 표기('09.6.30 현재 기준)  
임대료 및 운영비는 '10년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을 경상가로 명기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규모(2010년도)

(단위: 억원)

주무부처	세부사업	임대료			운영비			합계(A+D)	비고
		계(A)	국고(B)	지방비(C)	계(D)	국고(E)	지방비(F)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① ○○○사업								
	② ○○○사업								
	③ ○○○사업								

※ 협약체결, 공사중, 운영중으로 구분하여 비고에 표기('09.6.30 현재 기준)  
임대료 및 운영비는 '10년도 예산에 반영될 금액을 경상가로 명기

### 주무부처별 정부지급금 증감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예산(A)	2010년(B)	증감 (B-A)	비 고
주무부처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C+D)				
	○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주무부처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C+D)				
	○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 연구 및 참여진

분 야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국번: 788)
총 괄	사업평가국장	박 용 주	3779
기획·조정	산업사업평가팀장	최 미 희	3781
집 필	산업사업평가팀장	최 미 희	3781
	사업평가관	김 상 우	4685
	사업평가관	박 애 린	4681
	사업평가관	안 태 훈	4678
	사업평가관	윤 성 식	4677
	사업평가관	이 은 경	4671
	사업평가관	임 도 진	4675
	사업평가관	체 민	4676
	사업평가관	허 가 형	4679
	편 집	사무보조원	이 정 아





## 국가 주요 정책·사업 평가 보고서 목록

2009

	제 목	집 필 진	발간일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평가	이환성	2.16
2	난방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및 사업 평가	허가형	3. 9
3	공공기관 지분증권 손실현황 -공기업을 중심으로	이은경	3.31
4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 평가	이환성·이현정	4. 6
5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평가	김상우	4. 8
6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여차민	4.13
7	국민임대주택사업 평가	박홍엽	4.20
8	해외인턴사업 평가	정유진·박애린	4.29
9	민간유치건설보조금사업 평가	안태훈	5. 8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평가	윤성식	5.20
1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 -재정운용 평가	최미희외 2인	7. 7
12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 II -시설별 평가	김상우외 3인	7. 7
13	국가어항개발사업 평가	박홍엽	7.30
14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평가	이환성·이현정	8.10
15	2004~2008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이은경	9.17
16	U-Korea 선도사업 평가	여차민	9.17
17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정부사업 성과정보의 신뢰성 부족 유형 분석	김일권 외12인	9.17
18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 및 운용현황 평가	안태훈	9.25

	제 목	집 필 진	발간일
19	대형연구개발사업 평가 : 핵융합에너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윤성식	9.28
20	방과후학교사업 평가	박애린	11.4
21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 평가	정유진	11.16
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남은정	11.17
23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 평가	여차민외 2인	11.18
24	광역교통시설사업 평가	안태훈	11.19

사업평가 09-25

## 201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분석

---

발 간 일	2009년 11월 20일
편 집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발 행 인	신해룡
발 행 처	<b>국회예산정책처</b>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문인쇄소 (TEL 02·2272·7553)

---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TEL 02·788·3781)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ISBN 978-89-6073-273-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